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4년 문경시 경상북도 종합감사 －

2024. 9.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수	금액	감액	금액	추징	금액		
계			22건		15	7	1	22,677	7	194,181	1	78
1	○ ○ 과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		1								
2	○ ○ 과	인사운영 부적정		1								
3	○ ○ 과	공무원 교육훈련(상시학습) 업무처리 부적정		1								
4	◎ ◎ ◎ ◎ 과	의료급여사업 추진 부적정	1				1 (현금)	247		1		78
5	㉠㉠㉠㉠㉠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도·감독 소홀	1									
6	□ □ 과	기술용역 적격심사 업무 처리 부적정		1								
7	□ □ 과	관급자재 구매 적격심사 업무 처리 부적정		1								
8	㉡ ㉡ 과	농지처분 업무 부적정	1									
9	㉢ ㉢ ㉢ ㉢ 과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사후관리 소홀	1									
10	◇ ◇ ◇ ◇ 과	비관리청 소하천정비허가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1									
11	▷ ▷ ▷ ▷ 과	--- --- 민속마을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1									
12	△△△△△△△	---지구 외 관로(신설)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1					1	7,100			
13	●●●●●●과	--- --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1					1	25,712			
14	◇ ◇ ◇ ◇ 과	문경 ---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1					1	63,260			
15	㉣ ㉣ ㉣ ㉣ 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부적정	1		1	22,677						
16	◇ ◇ ◇ ◇ 과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부적정	1					1	35,900			
17	◇ ◇ ◇ ◇ 과	소하천(---천, ---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1					1	40,962			
18	☼ ☼ ☼ ☼ 과	문경새재 ----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1					1	21,000			
19	㉤ ㉤ 과	건축조례 운영 부적정	1									
20	㉤ ㉤ 과	피난 및 방화구조 관련 건축허가 처리 부적정		1								
21	▷▷▷▷과 등	문경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 부적정	1									
22	♠ ♠ 과 등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부적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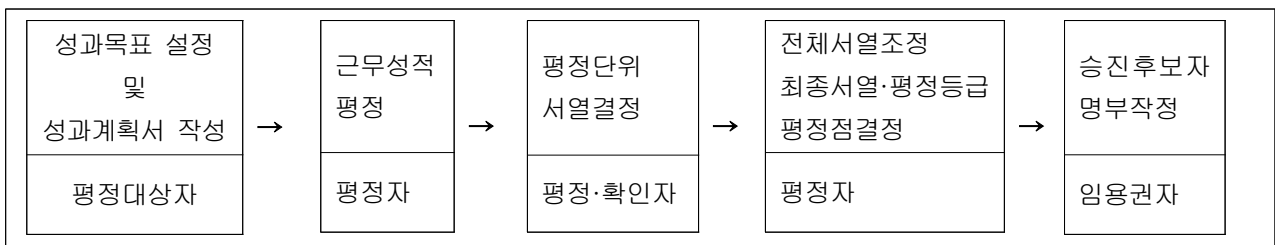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문경시에서는 2021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근무성적평정 실시 계획’을 내부결재 받고 근무성적 정기평정 실시계획 공문을 전 부서 및 읍·면·동 등에 통보하여 아래 [표 1]과 같은 절차대로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표 1] 지방공무원 평정절차 (2022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지침)



「지방공무원법」 제76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정기 및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4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에 따르면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두며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 결과를 종합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되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하지 않은 채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는 근무 성적 평정대상자의 순위와 평정점(안)을 작성할 때 제출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대조확인하여 순위를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 평정점을 심사결정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2021년 상반기 5급 이하 근무성적 평정 심의(안)을 작성하면서 평정단위별 제출된 서열명부를 제대로 대조·확인하지 않은 채 ☆☆☆☆국에서 제출한 지방--주사(일반--) 서열명부에는 --- (3위), --- (4위) 순으로 작성되어 있었음에도 최종 서열명부에는 --- (3위), --- (9위) 순으로 변경한 후 2021. 7. 29.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2021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4회 9명에 대해 평정단위별 제출된 서열명부의 전순위와 후순위를 변경한 채 근무성적평정점을 확정하였다.

[표 2]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변경한 채 근무성적평정 확정 내역

연번	평정시기	평정단위 기 관	직급 및 직렬	성 명	평정단위 서 렬	근무성적평정 결과	
						최종서열	평정점
1	2021년 상반기	☆☆☆☆	지방--주사(--)	---	3	9	52.1
				---	4	3	63.8
2	2021년 하반기	☆☆☆☆	지방--서기(--)	---	2	4	52.7
				---	3	3	58.4
3	2023년 상반기	□□□□ □ □ □	지방--주사보(--)	---	1	9	58.2
				---	2	6	62.4
4	2023년 상반기	○○○○ ○○○○	지방--서기보	---	4	41	53.8
				---	5	42	61.0
				---	6	23	53.4

그 결과,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가 유지되지 아니한 채 근무성적평정점이 심사·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병합), BBB(병합), CCC(병합)는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 ③ 관련자 DDD(병합), EEE(병합)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인사운영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문경시에서는 ---공무원 채용 등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등의 인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 임기제 공무원 채용 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에 따르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일반---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고,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각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27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에 따르면 공개 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해당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문경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7조 및 [별표 6]에 따르면 7급 상당 보건·방역·간호 분야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경력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간호사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7급 상당 ---공무원을 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간호사자격증 보유 및 그에 상응한 경력 3년 등을 자격요건으로 넣어서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도록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2021. 7. 5일 2021년도 제5회 문경시 지방---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7급 일반---제(---관리 --조사관)의 자격요건을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면허증 소지자로만 규정하여 2021. 7. 5 ~ 7. 16(12일간)까지 공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응시자 --- 등 3명이 시험에 응시하자 간호사자격증만을 확인 후 모두 서류전형 합격시킨 후 2021. 7. 27. 면접시험에서 ---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였다

[표1] ---관리 -- --관 채용 현황(----제 7급)

시험명	임용분야(인원) (임용등급)	자격요건	응시현황	최종합격자	비 고
2021년도 제5회 문경시 지방----- 공무원 임용시험 (6개 분야)	---관리-- 조사관 1명 (7급 ----)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경력3년 미만영	3명 - --- (경력 3년 미만) - --- (경력 3년 미만) - --- (경력 3년 이상)	---	경 력 미충족자 최종선발

그 결과 관련법령 및 규칙에 따라 간호사자격증에 대한 경력요건 3년을 규정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임용될 수 없었던 ---가 ----제(7급) 공무원으로 채용 되었으며 반면 경력 3년 이상을 충족하였던 ---은 탈락되었다

2. 특별사면(징계대상자) 선정 부적정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42(2024. 2. 7)의 특별사면(징계사면) 시행에 따른 인사 처리지침의 ‘사면범위’ 에 따르면 파면·해임·징계면직·강등·정직·감봉처분,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급횡령·유용 등 금품관련 비위, 성비위·음주운전·갑질비위, 정치운동·집단 행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받은 징계처분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상기 지침을 시·군에 통보하였으며, 문경시에서도 위 지침을 확인한 후 징계사면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특별사면(징계사면) 시행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음주운전 및 성비위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포함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전체사면대상자 100명중에 2011. 8. 17.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주사 --- 및 2014. 11. 21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주사 ---- 등 음주 및 성매매 등으로 인한 사면제외대상자 16명을 포함시켜 징계사면대상자를 작성하여 경상북도에 제출하였고 2024. 2. 7. 최종적으로 징계사면대상자로 확정 받도록 하였다.

[표 2]문경시 징계사면 대상자

연번	소속	성명	생년월일	징계처분 내용			비 고
				처분일	비 위	징계양정	
1	문경시청	----	00.00.00	2008.12.26	음주운전	불문경고	징계사면
2	"	----	00.00.00	2011.11.14	음주운전	불문경고	"
3	"	----	00.00.00	2011.08.17	음주운전	견책	"
4	"	----	00.00.00	2011.12.30	음주운전	견책	"
5	"	----	00.00.00	2014.11.21	성매매	견책	"
6	"	----	00.00.00	2008.12.26	음주운전	불문경고	"
7	"	----	00.00.00	2011.12.30	음주운전	견책	"
8	"	----	00.00.00	2009.01.01	음주운전	견책	"
9	"	----	00.00.00	2010.11.12	음주운전	견책	"
10	"	----	00.00.00	2010.11.12	음주운전	견책	"

연번	소속	성명	생년월일	징계처분 내용			비 고
				처분일	비 위	징계양정	
11	"	---	00.00.00	2009.01.08	음주운전	견책	"
12	"	---	00.00.00	2009.04.20	음주운전	불문경고	"
13	"	---	00.00.00	2010.07.06	음주운전	견책	"
14	"	---	00.00.00	2011.08.17	음주운전	견책	"
15	"	---	00.00.00	2008.12.26	음주운전	불문경고	"
16	"	---	00.00.00	2011.04.18	음주운전	견책	"

그 결과 특정비위(음주운전 및 성매매 등)로 인해 징계사면대상자에서 제외 되었어야 할 대상자가 포함되었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병합), BBB(병합), CCC는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 ③ 관련자 DDD(병합)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무원 교육훈련(상시학습)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문경시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상시학습제도 운영,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5급 이하 --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1]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하고,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 심사대상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2024. 5. 28. 행정안전부예규 제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Ⅱ.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 편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의 경우 개인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중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을 7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상기 사항은 2022. 3. 1. 이후 승진심사시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상기 지침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경우 2022. 3. 1. 이후 승진심사시부터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7시간 충족여부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경상북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및 그에 따른 시스템 기준 입력 방법 등을 2021년부터 매년 시·군에 통보하였다.

[표 1] 집합교육 의무시간 반영에 따른 관련 공문 통보 내역

연 번	일시	[경상북도 → 문경시 통보] 공문제목 (주요내용)	비고
1	2021.2.3	[도 인사과-2411] 2021년도 경상북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통보 (집합교육 2021. 1. 1 시행, 2022. 3. 1 이후 승진심사 반영)	상시학습 시스템 매뉴얼 (기준입력 방법 등)
2	2021.12.24	[도 인사과-25318] 2022년도 경상북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통보 (집합교육 2021. 1. 1 시행, 2022. 3. 1 이후 승진심사 반영)	상시학습 시스템 매뉴얼 (기준입력 방법 등)
3	2022.12.29	[도 인사과-25031] 2023년도 경상북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통보 (집합교육 2021. 1. 1 시행, 2022. 3. 1 이후 승진심사 반영)	
4	2023.12.28	[도 인사과-25463] 2023년도 경상북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통보 (집합교육 2021. 1. 1 시행, 2022. 3. 1 이후 승진심사 반영)	

따라서, 문경시에서는 관련지침(집합교육 의무이수 사항 반영) 시행에 따라 상시학습 시스템 매뉴얼을 통해 집합교육 이수 기준시간 반영 작업 등을 완료하여 개인이 인사랑 시스템을 통해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실적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어야만 하고, 이를 통해 2022. 3. 1. 이후 승진심사시부터는 승진후보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집합교육 실적여부를 확인하여 미이수자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승진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문경시 ○○과에서는 상시학습 시스템에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이수 기준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2021. 1. 1. 이후 소속직원들이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이수실적이 없었음에도 전체 교육훈련시간이 충족되도록 표현하였으며,

이로 인해, 아래 [표 2]와 같이 2022년 5회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8급→7급) 등 29명, 2023년 4회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행정7급→6급) 등 31명, 2024년 4회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7급→6급) 등 20명을 포함하여 202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80명이 집합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상시 학습시스템(현 인사랑시스템)에 이수기준시간을 “0시간”으로 설정하여 집합교육

미이수자의 충족여부가 모두 충족으로 표시되도록 하여 미이수자를 승진심사에서 제외하지 않고 승진·임용되도록 하였다.

[표 2] 3년간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미이수자 승진임용 현황

연번	년도 (심사횟수)	승진 직급 및 인원	교육훈련(상시학습) 실적 현황			상시학습 충족여부
		직급승진 내역	상시학습 시스템 기준입력 여부	대상자별 집합교육 필요시간	대상자별 집합교육 인정시간	
합계	3년간 (13회)	---(--8→7급) 등 80명 • 9급→8급 : 2명 • 8급→7급 : 56명 • 7급→6급 : 18명 • 6급→5급 : 4명				미충족
1	2022년 (5회)	---(--8→7급) 등 29명 • 9급→8급 : 1명 • 8급→7급 : 23명 • 7급→6급 : 5명	기준 “0시간” 설정 미 이수자 모두충족	7시간~12시간	0시간 ~ 55분	미충족
2	2023년 (4회)	---(--7→6급) 등 31명 • 9급→8급 : 1명 • 8급→7급 : 20명 • 7급→6급 : 8명 • 6급→5급 : 2명	“	6시간~17시간	0시간 ~ 4시간	“
3	2024년 (4회)	---(--7→6급) 등 20명 • 8급→7급 : 13명 • 7급→6급 : 5명 • 6급→5급 : 2명	“	9시간~22시간	0시간 ~ 15시간	“

* 문경시 확인 및 제출자료 재구성 (세부내역 불임)

그 결과, 2022. 3. 1. 이후 승진심사시 집합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승진심사에서 제외되었어야 할 총 80명(6급→5급 4명, 7급→6급 18명, 8급→7급 56명, 9급→8급 2명)이 승진임용 되었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병합), BBB(병합), CCC, DDD(병합)는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 ③ 관련자 EEE, FFF, GGG(병합), HHH(병합), III(병합)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의료급여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문경시 ○○○○○과에서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통해 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상실 관리 소홀

「의료급여법」 제16조, 제17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수급자의 소득·재산상황·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고,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자의 거부가 있는 경우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료급여의 변경 혹은 중지 시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의료급여사업 안내(보건복지부)」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 소득·재산 증가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상실 통보서를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취득, 변경,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였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2021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 [표 1]과 같이 159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 초과 등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88일까지 자격상실 처리가 지연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의료급여 자격상실 처리 지연 현황

연도	의료급여 수급권 지연처리 인원	지연 일수	지연 사유	비 고
계	159명			
2021년(3월부터)	--- 외 38명	최대 88일	담당자 전산처리 지연	소득인정액 초과, 연령 초과 등
2022년	--- 외 33명	최대 86일	담당자 전산처리 지연	
2023년	--- 외 56명	최대 50일	담당자 전산처리 지연	
2024년(6월까지)	--- 외 28명	최대 40일	담당자 전산처리 지연	

※ 문경시 제출자료 재구성(세부내역 불임)

또한, 아래 [표 2]와 같이 소득인정액 초과, 취업 등 의료급여 자격 중지(상실) 사유가 발생한 --- 등 14명의 의료급여 상실 처리를 최소 3일에서 최대 86일 지연 처리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연처리 기간 동안 52회에 이르는 의료급여 진료가 이루어져 2,787천 원의 진료비용을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의료급여 자격상실 지연처리로 인한 의료급여 기금 부담액 등 현황

(단위 : 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보호 종별	자격상실일	실제처리일	처 리 지연일	진료 횟수	기관부담액 (의료급여기금)
계							52회	2,787,760
1	---	00.00.00.	2종	2021.07.01.	2021.07.14.	13일	5	221,640
2	---	00.00.00.	1종	2021.07.01.	2021.07.27.	26일	7	147,280
3	---	00.00.00.	1종	2021.12.01.	2021.12.07.	6일	4	80,670
4	---	00.00.00.	2종	2021.11.01.	2021.12.09.	38일	5	331,500
5	---	00.00.00.	1종	2022.03.12.	2022.04.28.	16일	2	34,790
6	---	00.00.00.	2종	2022.03.01.	2022.05.24.	84일	7	403,160
7	---	00.00.00.	2종	2022.03.01.	2022.05.26.	86일	1	57,890
8	---	00.00.00.	2종	2022.05.31.	2022.06.03.	3일	1	34,390
9	---	82.01.11.	1종	2023.03.22.	2023.04.04.	13일	1	41,110
10	---	54.04.22.	1종	2023.08.09.	2023.08.17.	8일	1	126,040
11	---	74.04.17.	2종	2023.09.05.	2023.09.14.	9일	5	317,820
12	---	60.06.14.	1종	2024.01.11.	2024.02.20.	40일	2	92,610
13	---	42.02.09.	1종	2024.03.06.	2024.03.14.	8일	3	142,900
14	---	52.09.03.	1종	2024.05.08.	2024.05.21.	13일	8	755,960

※ 문경시 제출자료 재구성

2. 의료급여 수급자 종별 변경 소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하면 1종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8세 미만인 자, 65세 이상인 자 등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원의 구성원으로 명시하고 그 외의 수급자 등을 2종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의료급여법」 별표1 및 「의료급여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종별에 따라 아래 [표 3]과 같이 급여비용 부담에 차등을 두고 있으므로, 1종에서 2종 또는 2종에서 1종으로 수급자 자격이 변동 된 경우 기존 의료급여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고 변경된 내용에 맞게 새로운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변경 처리 전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환급신청 안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3] 종별 구분에 따른 수급권자 부담액 또는 부담률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mri, ct, pet 등 검사종류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수급자 종별 변경 지연으로 기금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는 경우가 없도록 수급자 자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초과지급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규정에 따라 환급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4]와 같이 --- 등 8명이 연령 도달로 의료급여 종별을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처리하지 않고 최소 4일에서 최대 50일 지연하였고, 그 중 --- 등 4명은 이에 따른 환급금 247,68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환급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 4] 의료급여 종별변경 지연처리 현황

(단위 : 원)

연번	대 상 자				종 별 변 경				처 리 지연일	환 급 발생금액
	성명	생년월일	선정일자	선정시 종별	적정 종별	사 유	사 유 발생일	종별변경 처 리 일		
	계	8명								247,680
1	---	000000	2014.8.21.	2종	1종	연령도래	2021.10.1.	2021.10.5.	4일	0
2	---	000000	2019.2.11.	2종	1종	연령도래	2022.8.1.	2022.9.20.	50일	14,500
3	---	000000	2012.4.24.	2종	1종	연령도래	2023.1.1.	2023.1.6.	5일	0
4	---	000000	2022.11.15.	2종	1종	연령도래	2023.4.1.	2023.4.25.	24일	218,930
5	---	000000	2021.12.8.	2종	1종	연령도래	2023.4.1.	2023.4.12.	11일	750
6	---	000000	2022.12.27.	2종	1종	연령도래	2023.11.1.	2023.11.17.	16일	0
7	---	000000	2019.3.1.	2종	1종	연령도래	2023.12.1.	2023.12.6.	5일	0
8	---	000000	2022.10.13.	2종	1종	연령도래	2023.12.1.	2024.1.10.	40일	13,500

※ 문경시 제출자료 재구성

3.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속임수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고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고, 납부기한 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납부대상자가 재산이 없거나 목적물인 총 재산의 전적가액이 체납처분비 보다 적은 경우로 확인된 경우나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 등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급여법」 제19조, 「의료급여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비용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구상금), 납부하지 않을 시 구상금 청구의 소를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민사상 강제 집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1조 및 「민법」 제766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시효만료 6개월 내 「민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수급자의 속임수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 발생한 ‘부당이득금’ 과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비용을 받은 때 발생한 ‘구상금’ 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고, 납부대상자가 미납부 시 채권보전 조치(재산조회, 독촉, 압류 등)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5]와 같이 --- 등 9명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과 구상금 징수잔액 23,190,710원에 대해 채권보전 조치를 소홀히 했으며, 이에 따라 이 중 5건, 23,112,130원은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결손처분도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5] 미회수 부당이득금·구상금 현황

(단위 : 원)

연번	구분	채무자	부과일	부과액	징수액	잔액	최종 채권보전조치 (시효종단)일	시효 경과 여부
계				25,400,680	2,389,970	23,190,710		
1	부당이득금	---	2016.12.16.	7,685,190	700,000	7,165,190	2019.02.22.(납부)	여
2	부당이득금	---	2017.04.05.	4,501,030	211,030	4,290,000	2017.12.15.(납부)	여
3	부당이득금	---	2017.06.22.	3,992,610	1,472,610	2,520,000	2018.10.26.(납부)	여
4	부당이득금	---	2018.12.21.	2,639,330	6,330	2,633,000	2018.12.21.(납부)	여
5	부당이득금	---	2021.01.05.	12,240	0	12,240	미이행	
6	부당이득금	---	2021.08.05.	13,940	0	13,940	미이행	
7	부당이득금	---	2023.04.13.	6,480	0	6,480	미이행	
8	부당이득금	---	2023.08.30.	45,920	0	45,920	미이행	
9	구상금	---	2021.05.07.	6,503,940	0	6,503,940	미이행	여

※ 문경시 제출자료 재구성

※ 부당이득금 소멸시효 : 5년(지방재정법 제82조), 구상금 소멸시효 : 3년(민법 제766조)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의료급여 종별 미처리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 247,680원을 해당 대상자에게 환급하시기 바라며, 「의료급여법」 제19조, 제23조에 따라 부당이득금·구상금 체납액(78,580원)을 조속히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 BBB는 훈계처분하시고, CCC는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도·감독 소홀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문경시 ○○○○○○○과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제42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1. 시설수급자 특별위로금 집행 부적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 제15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사회복지시설 회계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에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장시설이 수급자에 대하여 시설 생활에 필요한 주식비, 부식비, 취사용 연료비, 의류·신발비, 특별위로금 등을 시·군 담당부서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특별위로금은 급여생성 마감 전일까지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설·추석 전월에 50,000원을 연 2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드시 보장시설 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 일괄 지원된 생계급여 중 명절 특별위로금이 보장시설 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고 있는지 회계 관리 등의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고,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했어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2021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노인복지시설 9개소에서 시설수급자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명절 특별위로금 4,350천 원을 개별 지급하지 않고 시설 부식비로 지출하고 있는데도 개선명령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 1] 시설수급자 특별위로금 부적정 지급 현황

(단위 : 원)

연번	시 설 명	시기		특별위로금 사용 현황				비고
		연도	월	사용내용	수급자(명)	단가	금액	
	9개소				87명		4,350,000	
1	문경시 ——센터	2021	9월(추석)	세입 조치(수급자 9명분)	9	50,000	450,000	
2	——요양원	2022	2월(설)	시설부식비 집행	2	50,000	100,000	

연번	시 설 명	시기		특별위로금 사용 현황				비고
		연도	월	사용내용	수급자(명)	단가	금액	
3	——요양원	2021	9월(추석)	시설부식비 집행	8	50,000	400,000	
		2022	2월(설)	시설부식비 집행	9	50,000	450,000	
		2022	9월(추석)	시설부식비 집행	8	50,000	400,000	
		2023	1월(설)	시설부식비 집행	9	50,000	450,000	
		2023	9월(추석)	시설부식비 집행	11	50,000	550,000	
		2024	2월(설)	시설부식비 집행	1	50,000	50,000	
4	———	2023	9월(추석)	시설부식비 집행	1	50,000	50,000	
5	—— 종합복지센터	2021	9월(추석)	시설부식비 집행	4	50,000	200,000	
		2022	2월(설)	시설부식비 집행	5	50,000	250,000	
		2022	9월(추석)	시설부식비 집행	4	50,000	200,000	
		2023	1월(설)	시설부식비 집행	5	50,000	250,000	
6	——	2021	9월(추석)	시설부식비 집행	1	50,000	50,000	
		2022	2월(설)	시설부식비 집행	1	50,000	50,000	
		2022	9월(추석)	시설부식비 집행	1	50,000	50,000	
7	—— 요양원	2023	1월(설)	시설부식비 집행	1	50,000	50,000	
8	—— —요양원	2022	2월(설)	시설부식비 집행	1	50,000	50,000	
		2022	9월(추석)	시설부식비 집행	1	50,000	50,000	
		2023	9월(추석)	시설부식비 집행	2	50,000	100,000	
9	——요양원	2023	9월(추석)	시설부식비 집행	3	50,000	150,000	

※ 문경시 제출자료 재구성

2. 회계담당자 재정보증보험 가입 확인 소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수입 및 지출 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소규모 시설의 경우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회계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회계관계 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이때 회계 관직·책임 범위 등을 고려하여 1천만 원 이상의 재정보증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수입원 또는 지출원 등 회계담당자를 임명할 때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재산상의 손해를 대비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지도·감독했었어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표 2]와 같이 감사일 현재까지 문경시 시립노인 전문간호센터 등 22개 시설의 회계 업무 담당자가 재정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고 보조금 집행관리 등의 회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조치하지 않는 등 복지시설 회계 담당자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노인복지시설 회계담당자 보증보험 미가입 현황

연번	시설명	대표자	연도별 가입현황				비고
			2021	2022	2023	2024	
계	22개소						
1	문경시 ———센터	——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2	— ———요양원	——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3	—— —보호센터	——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4	———보호센터	——	-	-	-	미가입	
5	———사업소	——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6	—노인복지센터	——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7	—노인복지센터	——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8	———노인복지센터	——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9	———복지용구	——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10	———노인복지센터	——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11	———노인복지센터	——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12	———노인복지센터	——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13	———복지센터	——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14	———노인복지센터	——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연번	시설명	대표자	연도별 가입현황				비고
			2021	2022	2023	2024	
15	——복지센터	——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16	——복지센터	——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미가입	
17	——복지센터	——	-	-	미가입	미가입	
18	——복지센터	——	-	-	미가입	미가입	
19	——복지센터	——	-	-	미가입	미가입	
20	——요양센터	——	-	-	미가입	미가입	
21	——복지센터	——	-	-	-	미가입	
22	——복지센터	——	-	-	-	미가입	

※ 문경시 제출자료 재구성

3. 시설운영위원회 관리 부적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¹⁾ 중 시장·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시설이용·생활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시설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1회 시장·군수에게 예산 제출 시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제6호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에 개선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시설의 장, 시설 거주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법 제36조 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시장의 위촉 또는 임명을 받은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시정, 개선명령 등 조치를 하여 시설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및 시설이용·생활자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 - - - - 주야간보호센터 등 14개소에서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시장의 위촉 및 임명을 누락하여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 3] 시설운영위원회 등 설치 및 현황

연번	시설명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조치여부	비고
		설치여부	시장 위촉임명 여부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여부		
1	-----보호센터	여	여	부	부	
2	----보호센터	여	여	부	부	
3	----용구사업소	여	부	여	부	
4	----복지센터	여	부	여	부	
5	----노인복지센터	여	부	여	부	
6	---- 복지용구	여	부	여	부	
7	----노인복지센터	부	부	부	부	
8	----노인복지센터	여	여	부	부	
9	----가노인복지센터	여	부	여	부	
10	----노인복지센터	여	부	여	부	
11	----복지센터	여	부	여	부	
12	----노인복지센터	여	부	여	부	
13	----요양센터	여	부	여	부	
14	-----복지센터	여	부	부	부	

※ 문경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미지급한 시설수급자 특별위로금 4,350,000원을 개인별로 지급하시고, 미지급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회계담당자를 임명할 때에는 재정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시고,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②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③ 관련자 AAA, BBB, CCC, DDD, EEE, FFF는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기술용역 적격심사 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문경시 □□과에서는 기술용역인 문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등에 의거 적격심사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기술용역 계약현황

(단위 : 천 원)

용역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용역기간	비고
문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1. 8. 19.	105,056	(주)----- (포항시 소재)	'21. 8. 19. ~ '22. 4. 22.	

「지방계약법」 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²⁾(이하 “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2>

2) 행정안전부 예규 제166호(시행 2021. 7. 1.)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르면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3년 간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로써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주1) 이행실적 평가 중 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평가 중 평가대상 용역이란 현재 발주하려는 용역 중 실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말하며, 계약담당자는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도로설계, 건축설계, 토목감리, 건축감리, 측량 등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적격심사대상자는 7일 이내에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에 위 심사 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하고, 해당 기한까지 보완·추가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 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 하면 심사에서 제외하고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인정 부합여부를 확인하여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은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기술용역 적격심사의 이행실적을 평가할 경우 입찰공고 시 동일·유사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을 정확 하게 명시하고,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제출한 이행실적 서류가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인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여야 했다.

한편, □□과에서는 2021. 8. 2. 나라장터를 통해 제2021-0000호로 공고한 문경 ---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의 이행실적 평가는 체육시설 정비사업 등 관련 실시설계 용역(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준공실적)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6건의 이행실적 중 아래 [표 2]와 같이 3건의 실적은 학교 시설물 공사 관련 실시설계용역 이행실적으로 발주 용역(문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및 유사 용역(체육시설³⁾ 정비사업 등 관련 실시설계용역)과 이행실적평가 제한사항인 동일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출된 실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행실적평가 항목인 최근 3년 간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 지표에 배점한도 10점을 부여하여 (주)-----를 부적정하게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표 2] 제출된 이행실적 현황

(단위 : 원)

연번	실적명	내용	실적금액	심사인정	정당인정
합계	6건		80,847,800	80,847,800	46,146,100
1	---중학교 운동장 마사토포장 및 다목적구장 조성공사 설계 용역	---중학교 운동장 마사토포장 및 다목적구장 조성공사	8,281,900	○	○
2	·한국-----고등학교 외 1교 운동장 스탠드 설치 및 기타공사 설계 용역	·한국-----고등학교 외 1교(---초) 운동장 스탠드 설치 및 기타공사	9,576,600	○	○
3	-----초등학교 외 2교 운동장정비 및 기타공사 설계 용역	-----초등학교 운동장 정비 및 기타공사 ---중학교 마사토포 운동장 조성 및 기타공사 ---초등학교 다목적구장 조성공사	28,287,600	○	○
4	-----초등학교 외 3교 외부환경 개선공사 설계 용역	-----초등학교 진입로포장 및 기타공사 -----초등학교 배수로 설치 및 기타공사 ---초등학교 담장설치공사 ---초등학교 배수로 설치 및 기타공사	10,183,800	○	×
5	---초등학교 외 1교(포항 ---초) 외부환경개선공사 설계 용역	---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포장 및 웬스공사) -----초등학교 담장보수공사	13,594,900	○	×
6	---고 옹벽 및 배수로 설치공사 설계 용역	---고등학교 옹벽 및 배수로 설치공사	10,923,000	○	×

※ 문경시 제출자료 재구성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6. 8.)에 따르면 체육시설형태로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이 있고, 운동 종목으로는 골프장 외 체육시설종류가 열거되어 있음

이로 인해 아래 [표 3]의 적격심사 결과와 같이 정당하게 평가할 경우 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95점)에 미달하는 부적격 업체인 (주)----- (92.20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적격심사 결과

(단위 : 점)

심사분야·항목		배점한도	심사평점	정당평점	비고
합계			<u>95.20</u>	<u>92.20</u>	적격 통과 점수 (95점)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1. 이행실적 가)최근 3년 간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	10	<u>10⁴⁾</u>	<u>7⁵⁾</u>	
	2. 경영상태 가)종합평가 나)신용평가 다)재무평가	10	10 ⁶⁾	10	
나. 입찰가격		80	75.20 ⁷⁾	75.20	
다. 기술인력보유상황		-10	-	-	
라. 계약질서준수		-1	-	-	

4) 이행실적평가 = 이행실적합계/추정가격

$\frac{80,847,800}{109,281,818} = 73.98\%$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비율	60% 이상	60% 미만 50% 이상	50% 미만 40% 이상	40% 미만
	점수	10.0	9.0	7.0	6.0

5) 이행실적평가 = 이행실적합계/추정가격

$\frac{46,146,100}{109,281,818} = 42.23\%$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비율	60% 이상	60% 미만 50% 이상	50% 미만 40% 이상	40% 미만
	점수	10.0	9.0	7.0	6.0

6) 재무평가

가)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의 100% 이상은 5점)

$$\frac{1,961,307,527}{2,120,191,043} = 92.51\% \quad \frac{92.51\%}{46.74\%} = 197.92\% \quad (5\text{점})$$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의 100% 이상은 5점)

$$\frac{1,809,747,220}{124,636,018} = 1452.03 \quad \frac{1452.03}{135.03} = 1075.34 \quad (5\text{점})$$

7) 입찰가격

$$75.20 = 80 - 20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105,056,600)}{\text{예정가격}(119,703,650)} \right) \times 100 \right| \quad 80 - 20 \times | (0.88 - 0.87763) \times 100 | = 75.20$$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는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 ③ 관련자 BBB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관급자재 구매 적격심사 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문경시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문경 --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1차) 관급자재(레미콘) 구매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문경 --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1차) 관급자재(레미콘⁸⁾) 구매 계약 현황

(단위 : 천 원)

입찰공고일(공고번호)	추정가격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상대자	비고
'22. 8. 9. (제2022-1207)	276,281	299,990	'22. 8. 30.	--레미콘(주) (문경시 소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⁹⁾」(경쟁제품의 계약방법) 제7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29호, 2020. 3. 16.) (낙찰자 결정) 제9조에 따르면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입찰참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8)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3011150501, 레미콘)

9) 시행 '22. 6. 29. 법률 제18661호

그리고 같은 기준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제4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으로 고시금액¹⁰⁾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의 경우 [별표 2]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별표 1-1](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별표 1-2](기술능력(배점한도 5점)), [별표 1-3](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별표 2-2](입찰가격(배점한도 60점))의 이행능력 심사의 배점 기준 및 평가기준(신인도는 공통 적용)을 따른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문경 --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1차) 관급자재-레미콘의 추정가격이 276,281천 원이므로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입찰 관련 적격심사표에 따라 정당한 배점 및 평가 기준으로 적격심사를 하여야 하며,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후순위자에게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적격심사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문경시 □□과에서는 --레미콘(주)에 대한 적격심사를 진행하면서 추정 가격(276,281천 원)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별표 3](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별표 1-3](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별표 2-3](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의 이행능력 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으로 적격심사를 함으로써 종합평점 88점으로 위 업체를 적격 판정하였다.

한편, 위 사실이 감사 기간 중 지적되어 계약담당자를 통해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정당한 배점 및 평가기준으로 재차 심사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정당하게 평가할 경우 종합평점이 87.3점으로 적격통과점수(88점)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0) 시행 '21. 1. 1.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39호,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고시금액) 물품 및 용역은 2.1억 원

[표 2] 적격심사(재심사) 결과

(단위 : 점)

심사분야 항목		배점 한도	심사평점 ¹¹⁾	정당평점 ¹²⁾	비고
합계			88	87.3	
당해 물품납품 이행능력	납품실적 (동등이상, 유사물품)	5	-	5¹³⁾	적격 통과 점수 (88점)
	기술능력 (기술평가등급)	5	-	4¹⁴⁾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30 ¹⁵⁾	28.8¹⁶⁾	
입찰가격		60	58 ¹⁷⁾	48¹⁸⁾	
신인도(해당 가-감점)		+3 ~ -2	-	1.5¹⁹⁾	
결격사유(해당 감점)		-30	-	-	

이로 인해 관급자재 구매(레미콘) 계약과 관련하여 적격심사 부적격업체인 --레미콘(주)와 2022. 8. 30. 계약을 체결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병합)는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 ③ 관련자 BBB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1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1억 원) 미만으로 적격심사할 경우

1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고시금액(2.1억 원) 이상으로 적격심사할 경우

13) 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368,166,563원) ÷ 추정가격(276,281,109원) *100 = 133.26% : 5점(100% 이상)

14) 기술평가등급을 미보유·미확인될 경우 최저등급(T8 이하 : 보통이하) 평점은 4점으로 평가

1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1억 원) 미만으로 평가할 경우 소기업은 신용평가등급 점수를 30점으로 평가

16) 입찰공고일 '22. 8. 9., 등급평가일 '22. 7. 1. 기업신용평가등급 B+에 따른 28.8점으로 평가

17)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

$$58 = 70 - 4 \times \left| \left(\frac{91}{100} - \frac{\text{입찰가격}(299,990,000)}{\text{예정가격}(302,963,325)} \right) \times 100 \right|$$

18)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8점으로 평가

$$48 = 60 - 4 \times \left| \left(\frac{91}{100} - \frac{\text{입찰가격}(299,990,000)}{\text{예정가격}(302,963,325)} \right) \times 100 \right|$$

19) 소기업 0.75점 + KS제품인증서(레미콘) 0.75점 : 1.5점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지처분 업무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문경시 □□과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는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처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농지 처분명령 유예 부적정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의하면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등에게 처분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농지의 처분 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처분 대상 농지, 처분 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한국---공사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공사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나 -----공사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면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없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처분의무 통지 후 농지처분 여부, 자경 여부, -----공사와 매도위탁계약 체결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농지법 위반에 따른 농지처분의무(처분유예) 결정 통지” 공문을 처분의무 대상자에게 발송하여 32건의 처분의무 통지와 처분명령 유예를 동시에 통지하였다.

그리하여 아래 [표]와 같이 농지 처분명령 대상내역과 같이 감사일 현재 처분의무 및 처분명령 유예 통지 된 -면 --리 67-2 외 18건이 불법 임대 및 휴경 상태로 농지 처분명령 대상이나 농지 처분명령을 하지 않았다.

[표] 농지 처분명령 대상내역

(단위 : m²)

연번	농지위치	소유자	주소	처분사유	면적	처분의무기간	처분유예기간	현재 상태
1	—면 —리 67-2	—	경상북도 —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 하지 아니함	917	2021.03.08. ~ 2022.03.07.	2022.03.08. ~ 2025.03.07.	불법 임대
2	—면 —리 217-2	—	경상북도 —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 하지 아니함	731	2021.03.08. ~ 2022.03.07.	2022.03.08. ~ 2025.03.07.	불법 임대
3	—면 —리 592-1	—	대구광역시 —구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 하지 아니함	477.34	2021.03.08. ~ 2022.03.07.	2022.03.08. ~ 2025.03.07.	불법 임대
4	—면 —리 592-1	—	경기도 —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 하지 아니함	477.33	2021.03.08. ~ 2022.03.07.	2022.03.08. ~ 2025.03.07.	불법 임대
5	—면 —리 592-1	—	경상북도 —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 하지 아니함	477.33	2021.03.08. ~ 2022.03.07.	2022.03.08. ~ 2025.03.07.	불법 임대
6	—면 —리 727	—	인천광역시 —구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 하지 아니함	1,203	2021.03.08. ~ 2022.03.07.	2022.03.08. ~ 2025.03.07.	불법 임대
7	—면 —리 226-17	—	경상북도 —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 하지 아니함	7,400	2021.12.13. ~ 2022.12.12.	2022.12.12. ~ 2025.12.12.	불법 임대
8	—면 —리 196-1	—	경상북도 —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 하지 아니함	2,479	2021.12.13. ~ 2022.12.12.	2022.12.12. ~ 2025.12.12.	불법 임대
9	—면 —리 766-1	—	경상북도 —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 하지 아니함	2,925	2021.12.13. ~ 2022.12.12.	2022.12.12. ~ 2025.12.12.	휴경
10	—읍 —리 61-7	—	경상북도 —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 하지 아니함	937	2021.12.13. ~ 2022.12.12.	2022.12.12. ~ 2025.12.12.	휴경
11	—읍 —리 61-8	영농조합 법인	경상북도 —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 하지 아니함	1,074	2021.12.13. ~ 2022.12.12.	2022.12.12. ~ 2025.12.12.	휴경
12	—읍 —리 37	영농조합 법인	경상북도 —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 하지 아니함	5,233	2021.12.13. ~ 2022.12.12.	2022.12.12. ~ 2025.12.12.	불법 임대

연번	농지위치	소유자	주소	처분사유	면적	처분의무기간	처분유예기간	현재 상태
13	—면 —리 197-1	—영농조 합법인	경상북도 —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 하지 아니함	456	2021.12.13. ~ 2022.12.12.	2022.12.12. ~ 2025.12.12.	불법 임대
14	—면 —리 495	농업회사 법인주식 회사—	경상북도 —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 하지 아니함	2,704	2021.12.13. ~ 2022.12.12.	2022.12.12. ~ 2025.12.12.	휴경
15	—동 41-3	—	울산광역시 —구	휴경	747	2022.02.17. ~ 2023.02.16.	2023.02.17. ~ 2026.02.16.	휴경
16	—면 —리 293	—	울산광역시 —구	주말체험영농 농지의 임대	364	2022.03.01. ~ 2023.02.28.	2023.03.01. ~ 2026.02.28.	불법 임대
17	—면 —리 448	—	서울특별시 —구	휴경	1,840	2022.11.02. ~ 2023.11.01.	2023.11.02. ~ 2026.11.01.	휴경
18	—면 —리 450	—	서울특별시 —구	휴경	4,112	2022.11.02. ~ 2023.11.02.	2023.11.02. ~ 2026.11.02.	휴경

*문경시 제출자료 재구성

2. 청문 미 실시

「농지법」 제55조(청문)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행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에 대한 처분의무 발생 통지를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동안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채 농지 처분의무 대상자에게 서면 의견 제출을 받아 33건의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농지 처분명령 유예 통지 된 불법임대 및 휴경상태인 농지에 대해 농지처분 명령을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 BBB는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지하수 개발·이용 관련 사후관리 소홀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문경시 ☐☐☐☐과에서는 「지하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 관련 허가·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²⁰⁾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의2 및 제10조에 의하면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신고자가 허가를 받은 날 및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허가 취소 또는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 제40조 및 시행령 제14조, 제44조에 의하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은자 및 신고자가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준공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20)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인 경우(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0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준공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적산유량계를 봉인하고 준공확인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 제40조 및 시행령 제44조에 의하면 허가 또는 신고한 자가 그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하거나,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 및 시행규칙 제16조(2022.5.30. 이전은 제9조의3 적용, 제833호 2019.12.20. 및 제942호 2021.9.16.)에 따라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하고 원상 복구 하도록 되어 있고, 종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지하수법」에 따라 인·허가된 시설에 대해서 준공이 될 때까지 관리를 하면서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신고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처리하고 신고의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고도 준공 신고를 하지 않거나 종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허가자 및 신고자로부터 준공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적산유량계 봉인 등을 거쳐 준공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 대상 457개소 중 115개소가 준공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도 사유 파악 등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었고, 감사기간 중 준공 수리가 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아래 [표 1]과 같이 문경시 -읍 --리 424-6번지 등 42개소에 대해서는 신고 후 3개월 이상 미착공, 착공 후 3개월 이상 중단, 신고 후 연락두절 등 현재 까지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음에도 신고자에게 신고의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사유를 파악하여 조치하지 않았고,

아래 [표 2]와 같이 문경시 -면 --리 217번지 등 13개소에 대해서는 지하수 채취량 부족 등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대상임에도 종료 신고하도록 안내·독촉하거나, 종료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후속 조치 없이 방치하였다.

[표 1]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후 현재까지 개발 미완료 대상

연번	구분	허가신고일	개발자	개발위치	미준공 내용	적정 조치	조치 여부	비고
계			42개소					
1	신고	2021-12-22	---	--읍 --리 424-6	3개월내 미착공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2	신고	2021-04-15	---	-면 --리 423-2	"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3	신고	2022-11-29	---	--읍 --리 450	"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4	신고	2021-03-16	---	--읍 --리 922-1	"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5	신고	2023-05-08	---	--읍 --리 846-1	"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6	신고	2022-04-11	---	--읍 --리 566-1	"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7	신고	2021-09-08	---	--면 --리 83-4	"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8	신고	2021-12-29	---	-면 --리 80	"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9	신고	2022-02-23	---	--읍 --리 152-1	"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10	신고	2022-11-22	---	--면 --리 168	"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11	신고	2021-07-14	---	--읍 --리 43-1	"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12	신고	2022-06-17	---	--읍 --리 262	"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13	신고	2021-02-16	---	--읍 --리 55-4	"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14	신고	2021-02-23	---	--면 --리 642	"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15	신고	2022-01-04	---	--면 --리 19-2	"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16	신고	2022-11-07	---	--면 --리 58	착공후3개월이상 중단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17	신고	2021-09-29	---	--면 --리 9-2	"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18	신고	2021-03-22	---	--면 --리 499	"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19	신고	2021-04-30	---	--읍 --리 586-1	"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연번	구분	허가신고일	개발자	개발위치	미준공 내용	적정 조치	조치 여부	비고
20	신고	2023-06-13	(주)----	--면 --리 산 2-2	"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21	신고	2022-06-21	---	--면 --리 371	"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22	신고	2023-10-05	---	--면 --리 504	"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23	신고	2022-05-31	---	--동 664	"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24	신고	2021-01-29	---	--면 --리 420-6	연락두절등 미확인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25	신고	2022-04-15	---	--읍 --리 252-3	"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26	신고	2023-10-24	-----	--면 --리 310	"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27	신고	2021-09-06	-----	--읍 --리 산 23-5	"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28	신고	2022-11-29	---	--읍 --리 555-1	"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29	신고	2023-12-13	---	--면 --리 157-4	"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30	신고	2021-01-06	---	-면 --리 194	"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31	신고	2021-03-16	---	--읍 --리 94-4	"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32	신고	2022-11-29	---	--읍 --리 555	"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33	신고	2021-06-29	---	--면 --리 153-3	연락두절등 미확인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34	신고	2023-11-09	---	--면 --리 34	"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35	신고	2021-09-02	---	--면 --리 626	"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36	신고	2021-11-19	---	--동 168-1	"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37	신고	2021-01-25	---	--면 --리 190-2	"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38	신고	2021-09-02	---	--면 --리 4-1	"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39	신고	2021-05-17	---	--읍 --리 550	"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40	신고	2021-03-16	---	--면 --리 489	"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41	신고	2023-05-15	---	--면 --리 27	"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42	신고	2021-09-06	-----	--면 --리 산 85	"	신고효력상실통보 등	부	

※ 문경시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지하수 굴착 결과 개발·이용 종료예정 대상

연번	구분	허가신고일	개발자	개발위치	미준공 내용	적정 조치	조치 여부	비고
계			13개소					
1	신고	2021-12-16	---	--면 --리 217	채취량부족 등 개발·이용종료 신고 누락	과태료 부과 등	부	
2	신고	2021-03-29	---	--면 --리 434-21	"	과태료 부과 등	부	
3	신고	2021-03-29	---	--동 334-4	"	과태료 부과 등	부	
4	신고	2022-11-22	-----	-면 --리 487	"	과태료 부과 등	부	
5	신고	2021-07-21	---	--읍 --리 186-1	"	과태료 부과 등	부	
6	신고	2021-03-16	---	--읍 --리 590-1	"	과태료 부과 등	부	
7	신고	2021-09-29	---	--면 --리 496	"	과태료 부과 등	부	
8	신고	2021-02-16	---	--면 --리 636	"	과태료 부과 등	부	
9	신고	2022-07-06	---	--면 --리 661-1	"	과태료 부과 등	부	
10	신고	2021-04-30	---	--읍 --리 258	"	과태료 부과 등	부	
11	신고	2021-01-29	---	--면 --리 398-1	"	과태료 부과 등	부	
12	신고	2021-09-27	---	--읍 --리 43-6	"	과태료 부과 등	부	
13	신고	2021-01-14	---	--읍 --리 479-9	"	과태료 부과 등	부	

※ 문경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아래 [표 3]과 같이 문경시 읍 295번지 등 50개소에 대해서는 지하수 공사를 준공하고도 준공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이용하고 있는데도 준공 신고토록 안내·독촉하거나, 준공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아래 [표 4]와 같이 문경시 면 82-11번지 등 10개소에 대해서는 준공 신고를 접수하여 7일 이내에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준공신고 수리를 하여야 함에도 서류 미비, 조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감사일 현재까지 준공 수리를 하지 않는 등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대상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지하수 공사 준공 후 준공신고 누락 대상

연번	구분	허가신고일	개발자	개발위치	미준공 내용	적정 조치	조치 여부	비고
계			50개소					
1	신고	2021-06-30	---외 2	--읍 --리 295	공사준공 후 준공 신고 누락	과태료 부과 등	부	
2	신고	2022-11-22	--	--면 --리 169	"	과태료 부과 등	부	
3	허가	2021-12-24	문경시--과	--면 --리 663	"	과태료 부과 등	부	
4	신고	2021-04-02	---	--읍 --리 18-1	"	과태료 부과 등	부	
5	신고	2022-08-22	---	-면 -리 50	"	과태료 부과 등	부	
6	신고	2021-12-24	---	--면 --리 385	"	과태료 부과 등	부	
7	허가	2021-12-24	문경시--과	--면 --리 15-3	"	과태료 부과 등	부	
8	신고	2021-11-11	----주식회사	--면 --리 279-3	"	과태료 부과 등	부	
9	신고	2023-04-10	---	--면 -리 86-1	"	과태료 부과 등	부	
10	신고	2021-10-22	---	--읍 --리 374-2	"	과태료 부과 등	부	
11	신고	2023-02-21	---	--면 --리 484-5	"	과태료 부과 등	부	
12	신고	2021-03-25	-----	--읍 --리 277	"	과태료 부과 등	부	
13	신고	2022-01-05	---	--면 --리 780	"	과태료 부과 등	부	
14	신고	2022-07-24	-----	--면 --리 635	"	과태료 부과 등	부	
15	신고	2022-10-27	---	--면 --리 808	"	과태료 부과 등	부	
16	신고	2023-04-10	---	--면 --리 212	"	과태료 부과 등	부	
17	신고	2023-06-28	---	--동 383-9	"	과태료 부과 등	부	
18	신고	2021-12-24	---	--면 -리 271	"	과태료 부과 등	부	
19	신고	2023-06-26	---	--면 --리 산 5-23	"	과태료 부과 등	부	
20	신고	2021-03-25	-----	--읍 --리 산 68-1	"	과태료 부과 등	부	
21	신고	2022-08-18	---	--읍 --리 336	"	과태료 부과 등	부	
22	신고	2021-04-30	---	--면 --리 792-3	"	과태료 부과 등	부	
23	신고	2023-08-08	---	--면 --리 324	"	과태료 부과 등	부	
24	허가	2021-12-24	문경시--과	--면 --리 산 27	"	과태료 부과 등	부	

연번	구분	허가신고일	개발자	개발위치	미준공 내용	적정 조치	조치 여부	비고
25	신고	2021-03-05	----	--읍 --리 782-5	"	과태료 부과 등	부	
26	신고	2021-11-23	----	--동 378	"	과태료 부과 등	부	
27	신고	2021-06-03	-----	--읍 --리 960	"	과태료 부과 등	부	
28	신고	2021-12-17	----	--읍 --리 산 111-1	"	과태료 부과 등	부	
29	신고	2021-01-07	----	--동 644-2	"	과태료 부과 등	부	
30	신고	2021-12-24	----	--면 --리 182	"	과태료 부과 등	부	
31	신고	2021-12-24	----	--면 --리 274	"	과태료 부과 등	부	
32	신고	2021-07-14	----	--동 178	"	과태료 부과 등	부	
33	허가	2021-12-24	문경시--과	--면 --리 201	"	과태료 부과 등	부	
34	신고	2022-11-21	----	--면 --리 219-1	"	과태료 부과 등	부	
35	신고	2022-11-01	----	--읍 --리 92	"	과태료 부과 등	부	
36	신고	2021-06-03	----	--면 --리 526	"	과태료 부과 등	부	
37	신고	2021-01-28	-----	--읍 --리 162-4	"	과태료 부과 등	부	
38	신고	2021-04-23	--읍행정센터	--읍 --리 592	"	과태료 부과 등	부	
39	신고	2023-10-05	----	--면 --리 386	"	과태료 부과 등	부	
40	신고	2023-12-18	----	--면 --리 449	"	과태료 부과 등	부	
41	신고	2022-11-21	----	--읍 --리 158	"	과태료 부과 등	부	
42	신고	2023-10-11	----주식회사	--읍 --리 56	"	과태료 부과 등	부	
43	신고	2021-11-26	----	--면 --리 482-13	"	과태료 부과 등	부	
44	신고	2021-11-18	문경시공공기관	--면 --리 115	"	과태료 부과 등	부	
45	신고	2021-06-24	----	--면 --리 333	"	과태료 부과 등	부	
46	허가	2021-12-24	문경시--과	--면 --리 1353	"	과태료 부과 등	부	
47	신고	2021-11-08	----	--면 --리 81	"	과태료 부과 등	부	
48	신고	2021-12-24	-----	--읍 --리 232-8	"	과태료 부과 등	부	
49	허가	2021-01-25	문경시--과	--면 --리 산 59-2	"	과태료 부과 등	부	
50	신고	2022-08-03		--면 --리 222-3	"	과태료 부과 등	부	

※ 문경시 제출자료 재구성

[표 4] 지하수 공사 준공신고 접수 후 미처리 대상

연번	구분	허가신고일	개발자	개발위치	미준공 내용	적정 조치	조치 여부	비고
계			10개소					
1	신고	2023-06-12	----	--면 --리 82-11	준공신고 접수 후 미처리	준공수리 등	부	
2	신고	2021-12-29	-----	--읍 --리 960	"	준공수리 등	부	
3	신고	2023-09-20	----	--읍 --리 226	"	준공수리 등	부	
4	신고	2022-02-23	----	--읍 --리 524	"	준공수리 등	부	
5	신고	2023-01-31	----	--면 --리 13-1	"	준공수리 등	부	
6	신고	2023-01-04	--면행정센터	--면 --리 산 3	"	준공수리 등	부	
7	허가	2023-09-15	주식회사--	--동 792-7	"	준공수리 등	부	
8	신고	2023-12-26	----	--면 --리 53	"	준공수리 등	부	
9	신고	2021-01-07	----	--면 --리 64-1	"	준공수리 등	부	
10	허가	2023-09-15	주식회사--	--동 792	"	준공수리 등	부	

※ 문경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지하수 개발 허가·신고 대상 중 3개월 이상 미착공, 3개월 이상 중단 등 대상에 대해서는 착공 및 중단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효력상실 통보 등의 조치를 하시고, 준공 및 종료 신고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준공 수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는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비관리청 소하천정비 허가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문경시 ◇◇◇◇과에서는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아래 [표 1]과 같이 소하천을 지정·관리하고 정비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소하천 현황

시·군	개소수	총연장	소하천 지정일	비 고
문경시	185	379,290km	1996. 4. 30.	

1.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 등 정비 허가 부적정

「소하천정비법」 제10조 및 제17조,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소하천 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하천등 정비할 수 있고, 관리청은 해당 공사가 소하천 종합계획,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소하천 인공 구조물이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허가 및 고시하고 그 정비공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관리청은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준공검사를 완료하면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소하천 등 정비를 시행하는 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준공설계도서, 전경 및 구조물 사진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관리청은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면 준공검사 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준공검사증을 발급하고, 각 호의 사항²¹⁾을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6조에는 소하천 등 정비사업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고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 등 정비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관리청은 공사구간이 500미터 이상이거나 공사에 6개월 이상 걸리고 공사로 인한 재해발생 우려가 큰 경우에는 허가 신청인에게 공사비의 100분의 50이내의 금액을 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고, 준공시에 예치금액을 환급하거나 보증서 등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청에서는 소하천 등 정비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을 기초소하천 관리위원회 심의절차를 이행하여 소하천 종합계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장을 주는지, 소하천 인공구조물이 설계기준에 적합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이내의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여 허가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준공 시에는 허가한 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준공 검사시행 후 준공검사증 발급 및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1) 1. 소하천등 정비의 개요(초하천등 정비의 명칭 및 시행위치, 착준공연월일)
2. 소하천등 정비 시행자의 명칭
3. 소하천등 정비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4. 해당 소하천구역의 지형도면으로 1천500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5. 그 밖에 준공된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그러나 문경시 ◇◇◇◇과에서는 한국----- 문경지사장으로부터 --천, --천에 대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따른 하천정비 목적으로 소하천 등 정비 허가신청을 접수하였고, 아래 [표 2]와 같이 2022. 1. 3.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 등 정비 허가’를 통보·고시하였으나,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인허가 서류를 분실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2]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허가 현황

하천명	점용목적	사업개요	위치	면적	점용자		점용기간	비고
					주소	성명		
--천 --천	공작물설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따른 하천정비	문경시 ---면 ---리 506외 11필지	5,195㎡	문경시 ---면 ---리 251-4	한국----- 문경지사	2022.1.3. ~ 영구	2022. 1.3.

그리고 2022년 12월 한국----- 문경지사에서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문경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소하천 관리에 소홀하였고, --천은 한국-----에서 시공 제외하였음에도 문경시에서는 감사 기간까지 그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천 구간은 현장 확인한 결과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²²⁾가 발생 하였으며 아래 [그림 1]과 같이 전석쌓기 높이 및 기초 규격 미달, 뒷채움 잡석 미시공 등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리 부실시공 되었으나 피해 원인 규명 없이 수해복구공사 추진 계획 중이었고, 현재는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어 2차 피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2)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기준 피해액 126,027천원 복구비 167,115천원

[그림 1] --천 부적정 시공 현황



2.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따르면 소하천 등 정비사업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고 각 호의 사항²³⁾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시·군의 국장급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대학에서 방재학·하천공학 등을 가르치는

23) 1.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2.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
3. 소하천의 지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하천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수자원 개발·방재·하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는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위원은 관련법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위원을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로 구성하고 소속 공무원 4명을 당연직으로 포함시켜 소속공무원만으로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 의결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 소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객관적인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표 3] 문경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현황

연번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위원장	문경시	00도시국장	---	당연직
2	부위원장	문경시	◇◇◇◇과장	---	당연직
3	위 원	문경시	@@과장	---	당연직
4	위 원	문경시	♠♠과장	---	당연직
5	위 원	(주)-----	전무	---	
6	위 원	한국-----	상무	---	
7	위 원	--대학교	교수	---	
8	위 원	--대학교	교수	---	

그리고 문경시 ◇◇◇◇과의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 4]와 같이 2021~2024년까지 총 3회 심의가 있었으나, 2021년에는 위원 5명 중 소속공무원으로 3명을 구성하여 발주청의 의견이 과반수 찬성의결이

가능도록 하였고, 2022년에 소하천구역 변경에 대한 심의는 위촉직 2명의 의원이 계획홍수위 부족 또는 경작목적의 폐천에 대한 특혜 우려 등 조건부 의견²⁴⁾을 제출하였으나 서면심의 시행으로 인하여 다양한 의견에 대한 토론 없이 원안 채택 되는 등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약화되었다.

[표 4]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현황

연도	심의안건	심의기간	심의결과	심의방법	비고
2021	문경시 --천 소하천구역 일부 변경(안)	2021.04.19. ~ 2021.04.26.	원안가결 5명(당연직 3명, 위촉직 2명)	서면 심의	
2021	--천 소하천구역 일부 변경(안) 외 1건	2021.08.04. ~ 2021.08.10.	원안가결 5명(당연직 3명, 위촉직 2명)	서면 심의	
2022	--천 소하천구역 일부 변경(안)외 4건	2022.05.02. ~ 2022.05.13.	원안가결 7명(당연직 3명, 위촉직 4명)	서면 심의	조건부 의견 2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해당 소하천등 정비허가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7조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구성·운영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④ 관련자 AAA, BBB(병합), CCC(병합)는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24) 1. --천 소하천구역 변경: 민원인에 대한 경작목적의 폐천은 특혜우려가 있고 하천관리에 적정하지 않음
 2. --천 소하천구역 변경: 폐천하고자 하는 경우 폐천부지 등의 관리절차 이행
 3. ----천 소하천구역변경: 계획홍수위 보다 시설제방고가 낮으므로 대책수립 후 소하천구역 해체
 4. --천, --천 소하천구역변경: 일부구간 계획홍수량에 따른 여유고 적용 대책 수립 후 소하천구역 해체, 민원인에 대한 경작목적의 폐천은 특혜우려가 있고 하천관리에 적정하지 않음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민속마을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문경시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 민속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공사현황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도급자	비고
				계	도급액	관급액		
건설사업관리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1차)	건설사업관리 1식	2020.12.03. ~2023.12.31.	1,233	1,233	-	(주)----- -외1개사	준공
공사	-- --- 민속마을 조성사업	--- 전시관, 체험관 조성부지 조성(9,000㎡)	2019.12.16. ~2023.11.30. (‘23.11.17.중지)	8,199	6,551	1,648	--건설(주)	
	-- --- 민속마을 조성사업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옥내, 옥외)	2021.09.03. ~2024.06.18.	459	343	115	--전기(주)	
	-- --- 민속마을 조성사업 통신공사	통신공사 1식 (전사·체험관 옥외)	2021.09.03. ~2024.06.18.	124	105	19	(주)---	
	-- --- 민속마을 조성사업 소방공사	소방공사 1식 (전사·체험관)	2023.06.12. ~2023.11.30. (‘23.11.27.중지)	10	10	-	(주)---전기	
	-- --- 민속마을 조성사업 내 조경공사	조경공사 A=6,675㎡	2023.03.31. ~2023.9.26. (‘23. 4.25.중지)	1,302	1,025	277	(주)---토건	

1. 건설사업관리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제39조2 및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²⁵⁾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적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건설사업관리 방식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아래 [표 2]와 같이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 점수에 따라 사업관리방식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표 2] 평가결과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방식

평가점수(총점)	사업관리방식	비고
80점 이상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한다)	
50점 이상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할 수 있다)	
50점 미만	직접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할 수 있다)	

문경시 ▷▷▷▷과는 2020. 9. 4. 사업관리방식을 검토하여 발주청 역량평가 결과 67점으로 관련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적용을 결정하고 감독권한 대행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2020. 9. 28. 발주하였다.

따라서 상기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공사 준공전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기한이 도래 할 경우 변경된 공사기간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검토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변경 시행하여야 했다.

25) 1.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별표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2.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등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권한대행업무를 포함하는 건설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공사 진행 중에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별도의 건설 사업관리계획 변경 검토 없이 2023. 12. 31. 건설사업관리용역만 준공처리 하였고, 관련법에 따라 직접감독이 불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직접감독을 시행 하는 등 사업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2. 계약기간 연장 부적정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르면 제25조제3항 어느 하나의 사유²⁶⁾가 계약기간 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예규 제47조에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지시한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6조에 공사기간연장의 사유 등이 있을 때 시공사로부터 수정공정표를 제출받아 계약기간의 조정을 검토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계약기간의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발주청과 시공자가 연장기간 산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결정 하도록 하고 있다.

26) 1. 불가항력의 사유(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등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5.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등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계약기간내 공사의 정지나 연장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실조사 및 연장기간 산정 근거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공사기간을 연장하면서 연장일수에 대한 타당한 산정근거 없이 잔여공정에 대한 역공정으로 산정하거나, 공사기간 중 1mm 이상 강우일수 만큼 산정하는 등 공사 준공을 1~2주 앞두고 무분별하게 계약기간을 연장하였고, 그 결과 시공사의 간접비 청구 우려가 있다.

[표 3] 공사기간 연장 현황

구 분	계약구분	공기연장 시 행 일	공사기간		연장일수	연장사유
			당 초	변 경		
1	총괄	2021. 5.11.	2019.12.16.~ 2021.09.21.	2019.12.16.~ 2022.10.31.	405일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이행사항, B/F적용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2차		2020.12.24.~ 2021.05.16.	2020.12.24.~ 2021.06.16.	31일	
	3차		2021.03.25.~ 2021.09.20.	2021.03.25.~ 2021.12.20.	91일	
2	3차	2021.11.29.	2021.03.25.~ 2021.12.20.	2021.03.25.~ 2022.04.20.	120일	우천으로 인한 공기연장
3	3차	2022. 4.13.	2021.03.25.~ 2022.04.20.	2021.03.25.~ 2022.06.20.	61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및 접촉자 격리
4	총괄	2022.10.11.	2019.12.16.~ 2022.10.31.	2019.12.16.~ 2023.06.30.	240일	예산 절감을 위한 시설계획 변경, 제반 인·허가 및 설계 변경으로 인한 건축공사 착공지연
	4차		2022.06.21.~ 2022.10.31.	2022.06.21.~ 2023.06.30.	240일	
5	총괄	2023. 8.21.	2019.12.16.~ 2023.08.28.	2019.12.16.~ 2023.11.30.	94일	전기공사 관련 한전과 협의, B/F재승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강우에 의한 공기연장
	4차		2022.06.21.~ 2023.08.28.	2022.06.21.~ 2023.11.30.	94일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 무단 이탈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2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수행기간 중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11조에는 상주기술인은 현장근무를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 관리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등의 별점관리기준에 의하면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2점의 별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공사의 책임건설관리기술인의 경우 과업기간 중 업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아래 [표 4]와 같이 현장이탈계를 제출한 후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총14회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었고 문경시 ▷▷▷과에서는 어떠한 조치 없이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4] 책임건설관리기술인 이탈현황

구분	이탈날짜	사유	승인여부	비고
1	2021.3.19.	개인사유	부	
2	2021.4.14.	개인사유	부	
3	2021.5.12.	개인사유	부	
4	2021.9.6.	개인사유	부	
5	2021.11.23.	개인사유	부	
6	2021.12.16~17.	개인사유	부	
7	2022.3.3.~4.	개인사유	부	
8	2022.5.27. / 5.30.	본사교육, 정기건강검진	부	
9	2022.9.30	개인사유	부	
10	2022.11.4.	본사교육	부	
11	2022.12.19.	개인사유	부	
12	2023.1.9.	개인사유	부	
13	2023.1.30.~2.1.	개인사유, 본사교육	부	
14	2023.10.27. / 10.30	본사교육, 정기건강검진	부	

4. 안전보건조정자 미지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공사비 합계가 50억 원 이상이고, 2개 이상의 건설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고 있으면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민속마을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조경 공사 등 각 건설공사의 사업비 합계가 50억 원 이상이고,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고 있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지 않았다.

5.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부적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중소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건설공사의 사업비 합계가 40억 원 이상이고, 직접구매대상 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민속마을 조성공사’의 순환골재 7,331m³를 구입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대상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채 관급자재로 구입하지 않았으며, 사급자재로 구입하여 사업비 22,501천 원²⁷⁾을 낭비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발주청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책임건설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87조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등 관련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④ 잔여 공정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조에 따라 발주청의 역량에 맞는 사업관리 방식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⑤ 관련자 AAA는 **훈계처분** 하시고, BBB, CCC, DDD(병합)는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2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낙찰하한율 87.995%적용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지구 외 관로(신설)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
 내 용

문경시 △△△△△△△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지구 외 관로(신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1] 공사현황

공사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공사기간	시공사 (대표자)	비고
		계	도 급	관 급			
--지구 외 관로(신설) 설치사업	하수관거 L=21.4km 배수설비 303가구	13,312,110	9,447,330	3,864,780	2021.6.25.~ 2024.12.31.	--건설(주) (---)	

1. 하수관 수밀시험 및 CCTV 조사용역 분할 발주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²⁸⁾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 되어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28)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함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²⁹⁾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문경시 △△△△△△△에서는 상기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실시한 ‘수밀시험 및 CCTV 조사용역’은 본공사 시행에 따라 사업내용이 확정된 단일사업으로 시행함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본공사에 따른 수밀시험 및 CCTV조사 용역을 아래 [표 2]와 같이 8건으로 분할 발주하였고, 그 중 7건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수의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고 5,943천 원³⁰⁾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29)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30) 연번8 --지구 하수관 수밀시험 및 CCTV시험 용역의 경쟁입찰 낙찰율 86.4%적용

[표 2] --지구 하수관 수밀시험 및 CCTV조사 용역 현황

연번	용역명	계약일	계약방법	발주금액	계약금액	낙찰율	비고
1	--지구 외 관로(신설) 설치사업 하수관 수밀시험 및 CCTV시험 용역 (--처리분구)	'22.4.26.	수의계약	21,900	19,710	90.0%	
2	--지구 외 관로(신설) 설치사업 하수관 수밀시험 및 CCTV시험 용역 (--제길분구)	'22.4.27.	수의계약	21,900	19,710	90.0%	
3	--지구 외 관로(신설) 설치사업 하수관 수밀시험 및 CCTV시험 용역 (1차)	'22.5.3.	수의계약	21,000	18,900	90.0%	
4	--지구 외 관로(신설) 설치사업 하수관 수밀시험 및 CCTV시험 용역 (--처리분구)	'22.5.9.	수의계약	21,870	19,683	90.0%	
5	—리 —(—) 오수관로(신설) 설치사업 (하수관 수밀시험 및 CCTV조사 용역)	'23.3.15.	수의계약	21,348	19,210	90.0%	
6	—리 —(—) 오수관로(신설) 설치사업 (하수관 수밀시험 및 CCTV조사 용역)	'23.5.16.	수의계약	21,448	19,800	92.3%	
7	--리 --(--들 외 1지구) 오수관로 (신설) 설치사업 (하수관 수밀시험 및 CCTV조사 용역)	'23.6.19.	수의계약	21,752	19,570	90.0%	
8	--지구 외 오수관로(신설) 설치사업 하수관 수밀시험 및 CCTV시험 용역	'23.8.4.	경쟁입찰	403,616	348,731	86.4%	

2. 설계변경 공사비 과다계상 및 공사감독업무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 제4조, 제138조제1항, 제14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설계도면·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전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문경시 △△△△△△△에서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 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 된 공종은 설계 변경을 하여 감액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설계자의 최초 설계도서 검토 시 배수설비 공사에서 발생 되는 토사를 이용해 정화조 폐쇄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잔토처리 및 모래부설 등을 감액하지 않는 등 7,100천 원(제경비포함)을 과다계상 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7,100,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는 **훈계처분** 하시고, BBB, CCC(병합)는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〇〇〇〇〇과
내 용

문경시 〇〇〇〇〇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표 1]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공사	문경	--	교량 및 진입로 (L=353m, B=10~14m)	3,413	2022.12.26.	2022.12.27. ~ 2024.11.5.	(주)-- ---	

1.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심의방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12절-제3관(공법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르면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고,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 제안서를 평가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법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 제안 참여자에게 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공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제안 참여자는 공법 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 해당 공법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공사”에 필요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이 공정하게 회의를 주관하여 위원들이 제안서를 평가하도록 하고, 제안참여자가 공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위원은 제안참여자에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법평가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공사”에 필요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회를 서면으로 실시하여 제안참여자에게는 공법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기회와 위원들에게는 공법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제안사별 심의 요청서에는 공법 출원번호, 공법의 명칭, 공법 실적현황이 노출되어 위원들은 해당 제안참여자의 회사명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성평가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평가위원들과 제안사간 사전접촉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정성평가 부분)이 심도 있고 공정하게 평가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안서 평가에 따르면 공법 제안서는 공사비, 경영상태 등 정량적 평가와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 등 정성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안참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해당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안 중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공사의 공법선정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법제안순위와 공법적용 범위 등에 대한 계획을 통보해야 하고, 공법선정자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공법에 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계약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협약상의 권리·의무³¹⁾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공법선정 취소를 하거나 공법제안 내용이 바뀌게 되면 타 제안사에게도 바뀐 기준으로 다시 제안³²⁾을 받아 신기술·특허공법 재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산업(주)³³⁾와 2022. 11. 3.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실시설계 용역사[(주)----엔지니어링]에서 현장 기초조사 오류(--천 하천기본계획 미반영)로 교량계획³⁴⁾이 변동됨에 따라 ----산업(주)에서는 교량폭은 변경되지 않음에도 당초 제안한 거더본수와 형고를 아래 [표 2]와 같이 변경(직접공사비 202,000천 원 증액)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재평가 되지 않았으며, 정당하게 선정될 수 있는 업체의 공법선정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

[표 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개요

(단위 : 천 원)

구 분	공법 제안사	공법 제원 (제안공고 시)	제안내용			직접공사비	비고
			본수	거더길이	형고		
거 더	----산업(주)	L=49.2m, B=14m	5	50.537m	0.9m	398,000	당초
			6	59.087m	1.1m	600,000	변경

31)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서약서 :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공사비가 작성 될 경우 처분되어지는 행정조치에 대해서 감수 할 것을 서약함

32) 경간장이 바뀌게 되면 제안사별 본수 및 형고 증가량이 상이함

33) 2022.10.7.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 공고 후 공법선정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선정된 제안사

34) 경간장 - 당초 : 49.2m(23.07+26.13), 변경 : 57.4m(26.235+33.237) / 가각부 - 당초 : 19m, 변경 : 51m

3. 사업 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 보상협의 미실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해당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사 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해 유상매입을 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업 구간 내 편입되는 사유지 2필지 729㎡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개인사유지를 훼손하는 등 보상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채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4. 품질 시험실 및 품질관리자 미배치 등 품질관리업무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대하여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로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와 20㎡ 이상의 시험실 규모를 갖추고, 초급기술인 이상인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39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확인하고 시공자가 품질시험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품질시험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해당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임에도 품질시험 계획 미승인, 품질시험실 미설치, 품질관리자 미배치 하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5. 건설공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등) 제1항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³⁵⁾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해당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6. 실정보고 승인 부적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에 따르면 “실정보고”란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35)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같은 지침 제13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실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감독자는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해당 공사를 시행하면서 예산의 변경이나 계획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 현장의 실정에 맞는 공사를 시행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보조기층 운반 실정보고 건과 관련하여 관급자재 골재원(영주시 -면 --로 505번길)에서 현장까지의 거리 72k.m 중 비포장 거리를 1km로 산정하여 실정보고를 승인하였으나, 실제 비포장 거리는 감사결과 아래 [표 4]와 같이 0.1km로 확인되는 바, 현장 확인 검토 없이 승인하는 등 실정보고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4] 보조기층 운반거리 변경 승인결과

공 종	운반거리	수량(㎥)	단가(원)	순공사비(원)	단가 증감	비고
보조기층 운반	L=31.1km (비포장 0.1km)	4,191	22,196	93,023,436		당초
	L=72.2km (비포장1km)	4,191	50,427	211,339,557	28,231원/㎥	승인 ³⁶⁾
	L=72.2km (비포장 0.1km)	4,191	48,703	204,114,273	26,507원/㎥	감사결과

36) 보조기층 전체 물량(4,191㎥) 중 실제 투입된 물량(153㎥) 실정보고 승인

7. 공사감독 업무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건설공사 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에 따르면 공사 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 계획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설계의 변경)에 의하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와 공법변경 및 투입 자재를 변경하여도 목적인 품질의 확보가 가능하고 공사비를 절감 할 수 있을 경우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 및 공정계획표대로 추진되었는지를 시행 단계별로 정밀히 확인·검측하여 공사시설물이 차질 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초 설계 물량 및 자재 등이 과다 산정되었거나 현장여건의 변동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가설건축물(컨테이너 3동)을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없이 이용하고 있으며, 세륜세차시설 및 톤마대쌓기를 미설치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시공지시 및 사업비 25,712천 원을 감액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25,712,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미설치된 세륜세차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일반 조건에 따라 현장 내 적절한 위치에 설치 후 공사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④ 관련자 AAA, BBB는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 ⑤ 관련자 CCC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문경 --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문경시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문경 --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급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문경 --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문경	--	지방하천정비 L=5.09km 소하천정비 L=5.75km	21,978	2022.07.20	2022.07.22. ~ 2026.09.03.	(시공사) (주)----- --- (건설사업관리자) (주)-----기술 외 1 --- 외 1	

1.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기술자문 미이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 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 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및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이거나 구조물이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 중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문경 --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이면 건설사업관리계획에 대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해당 공사를 추진하면서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및 구조물이 포함된 공사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에 대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2.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부적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구매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건설공사의 사업비 합계가 40억 원 이상이고, 직접구매대상 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사업에 반영된 잡석(깎잡석, 계비온석, 혼합쇄석)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대상 여부 검토 및 공사의 관급자재로 구입하지 않고 사급자재로 설계서에 반영하여 138,230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공종별로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 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 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같은 지침」 제97조(설계변경 관리)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 및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추진 시 공사가 설계도서 및 공정계획표 대로 추진이 되었는지 공사 시행 단계별로 정밀히 확인·검측하여 공사시설물이 차질 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발생 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해당 공사를 시행하면서 예산의 변경이나 계획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 현장의 실정에 맞는 공사를 시행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불필요한 공종에 대해 실정보고 승인 및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63,260천 원을 감액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표 2] 미시공 현황

(단위 : 천 원)

감사 지적사항	수 량	당 초	변 경	감 액	비 고
1. 소교량 하부치환 미시공	1개소	6,250	4,300	1,950	
2. 천단거푸집 한면 미시공	214㎡	18,230	8,910	9,320	
3. 톤마대 수량 반영 부적정	562EA	92,380	57,490	34,890	
4. 콘크리트 양생 실정보고 승인 부적정	23,384㎡	17,100	-	17,100	
합 계		133,960	70,700	63,260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63,260,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병합), BBB(병합)는 훈계처분 하시고, CCC(병합)는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문경시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수탁자)	비고
	읍면	리동						
--1리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	--1	마을회관 리모델링 1식, 제방정비1,1km	1,066	2021.11.18.	2021.11.24. ~ 2023.11.06.	--건설(주) --- 한국----- (문경지사)	
--리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	--	빈집철거 9호 마을안길정비 L= 5.03km	1,139	2021.11.18.	2021.11.24. ~ 2023.12.27.	(주)-- --- 한국----- (문경지사)	
--1리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	--1	주택정비, 마을환경개선	1,128	2022.11.29.	2022.12.12. ~ 2024.12.30.	---(주) --- 한국----- (문경지사)	
--3리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	--3	주택정비, 마을환경개선	1,045	2022.11.29.	2022.12.12. ~ 2024.12.31.	-----건설(주) --- 한국----- (문경지사)	

1. 농어촌 생활환경정비계획 미포함 지구 사업 시행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세워야 하며,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시장·군수는 생활환경정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 사업별로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생활환경사업을 추진하려면 생활환경정비계획,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장·군수는 생활환경정비계획에 포함된 빈집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64조에 따라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에 포함된 빈집에 대하여 생활환경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농어촌정비계획에 포함된 지구 및 현황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생활환경정비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외 3개소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하였다.

2. 사업추진 협의체 미구성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지침」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시 지방비 확보, 마을주민 의사결정 및 이해관계 조정 협조, 사업시행, 사업부진 관리, 시·군·구 단위 행정·기술 등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및 컨설팅 지원 등 주민·마을 주도의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구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시장·군수는 “세부설계검토 협의회”를 구성하여 세부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량, 재료, 단가 산정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고, 공정한 시공을 위해 세부설계검토 협의회를 구성하여 성실하게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시·군·구 단위의 협의체 및 세부 설계검토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해당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소하천 관리청 미허가 공사시행

「소하천정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소하천 등 정비 허가를 받으려면 소하천 등 허가 신청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정도의 보수공사나 평상시의 소하천 보전행위일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하천 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으로부터 해당 공사가 종합계획·중기 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소하천에 설치하려는 인공구조물이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받아 소하천 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문경지사에서는 “--1리 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수탁 받아 -- 소하천의 제방 L=1,122m을 정비하는 공종을 추진하면서도 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사를 하였으며, 위탁자인 문경시 □□□□과에서는 공사에 대한 사전 행정 절차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 사업 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계인수 승인 부적정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에 따르면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필요시 완공된 부분준공)를 신청하여야 하며 준공

인가 신청을 받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 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농어촌정비사업의 준공검사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또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시행·사업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한 후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시행·사업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필요 시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도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문경시 □□□□과에서는 “--리 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중 -- 소하천 정비 구간에 집중호우(2023.6~7.)로 인한 수해 피해로 아래 [그림 1]과 같이 호안기초 유실 및 하상보호공이 파손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부분에 대해 구조물(전석쌓기) 준공검사를 승인³⁷⁾하였으며,

또한, 농어촌공사 문경지사에서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당초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음³⁸⁾에도 발주청에 준공보고 하는 등 수탁자로서 상호 계약³⁹⁾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⁴⁰⁾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였다.

37) 2024.1.29.□□□□과에서 입회하여 농어촌공사와 준공검사를 하였으며, 아스콘 포장 일부 부분 재시공 지시 후 2024.6.25. 최종 시설물에 대한 인계인수 승인 통보(□□□□과-4592호)

38) 전석쌓기 높이(감사 시 현장조사) 및 호안기초 규격 미달, 뒷채움 잡석 미시공

39) 2020.6.8. 문경시와 -----(문경지사)간 --리 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위(수탁)계약 체결(농어촌정비법)

40) 미시공(시스템비계, 부직포, 뒷채움)에 대한 정산(시공비, 재료비) 없이 완료보고

[그림 1] 수해피해 현황



[그림 2] 부실시공 현황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부당 지급된 사업비 22,677,000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중 도면 및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된 구간(--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④ 관련자 AAA는 **훈계처분** 하시기 바라며,
- ⑤ 관련자 BBB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문경시 ◇◇◇◇과에서는 하천환경을 개선하여 생태계를 복원하고 주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 업 비			계 약 일	사업기간	도급자 (대표자)	비고 (공정률)
			계	도급	관급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문경시 --면 --리	하천복원 L=2.7km 교량개체 2개소 등	8,595	6,474	2,121	'21. 11. 18.	'21. 11. 24.~ '25. 5. 7.	--건설(주) (---)	64.5%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문경시 --면 --리	건설사업관리 1식	1,550	1,550	-	'21. 12. 8.	'21. 12. 9.~ '24. 11. 21.	(주)----기술 외 2개사	

1.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 조정 부적정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에 따르면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3% 이상 증감된 경우와 해당 공사의 세부설계 확정 또는 설계변경으로 추정공사금액 또는 공사 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 이상 증감된 경우 등에 해당 하는 경우 대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9조에 따르면 해당 공사내용 및 공사 진척상황,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에 따라 기술인 배치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소 1명 이상의 상주기술인을 배치하는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의 기술인수를 조정·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물가변동이나 공사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대가를 조정하여야 하고, 동절기 및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소한의 상주기술인만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당초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 산정 시 추정공사금액을 154억 원으로 책정하였으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보상비 등을 제외한 공사금액은 112.5억 원으로 41.5억 원이 감액되어 대가에 영향을 미치는 난이도가 당초 0.388에서 0.338로 변경되고, 용역비도 1,293,500천 원에서 135,500천 원 감액된 1,158,000천 원으로 대가를 조정하여야 함에도 대가를 조정을 하지 않은 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시켰고, 2021. 1월부터 2021. 3월까지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상에 동절기 특별한 작업이 없었는데도 서류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전원 배치하였다.

그 결과 2024년 7월 감사일 현재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난이도를 조정하면 해당 공사가 10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전원 철수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2.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미이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⁴¹⁾인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를 발주하여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잡석과 레미콘에 대하여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잡석의 경우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구입하지 않고 사급자재로 구입하여 21,222천 원(세경비 포함)을 낭비하였으며, 레미콘의 경우 원자재 수급 불균형을 사유로 따라 2022. 3. 30.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여 구입하였다.

41) 세부품목의 추정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목에 한정하여 직접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음

3. 공사원가 과다 계상 및 설계변경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 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교량 철거에 따른 고재를 반영하지 않아 11,500천 원(부가세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고, 가설사무실의 경우 당초 설계서대로 축조하지 않고 다른 현장에서 사용 하던 사무실을 양도받았음에도 17,470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하지 않았으며, 자연석 쌓기 기초의 경우 합판거푸집으로 설계가 되어 있음에도 유로폼으로 시공 하고 6,930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하지 않는 등 총 35,900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또한, 경상북도 000-14429호(2021. 9. 16.) 공문 비탈면 보호공(여유고)을
줄때에서 초류종자와 거적으로 변경하도록 계약원가 심사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설계도면을 수정하지 않고 내역서만 수정하여 발주하였고, 2023. 2. 15. 계약원가
심사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도면과 물량내역서 상 규격이 다르다는 사유로 초류
종자와 거적을 다시 줄때로 변경하여 시공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여 예산
37,448천 원(제경비 포함)을 낭비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35,900,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병합), BBB(병합)는 **훈계처분** 하시고, CCC(병합)는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소하천(--천, --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문경시 ◇◇◇◇과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소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사업현황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 업 비			계 약 일	사업기간	도급자 (대표자)	비고 (공정률)
			계	도급	관급				
--천 소하천 정비사업	문경시 --면 --리	하천정비 L=4.5km 교량개체 9개소 등	8,655	5,632	3,023	'23. 10. 31.	'23. 11. 15.~ '26. 12. 25.	(주)----건설 (---)	1.0%
--천 소하천 정비사업	문경시 --면 --리	하천정비 L=3.8km 교량개체 15개소 등	8,792	5,027	3,765	'23. 10. 31.	'23. 11. 13.~ '24. 12. 23.	----건설(주) (---)	5.0%

1. 생태계보전부담금 미통보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⁴²⁾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42)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등

그리고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르면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환경부장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인·허가 등의 내용에 관한 통보의 수령,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납부기간 등에 관한 통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인·허가 등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경상북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을 추진하면서 인·허가 등을 하였음에도 2024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경상북도지사에게 통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 생태계보전부담금 미통보 현황

인·허가등 기관	사업명	소재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회신일	인·허가일자	생태계보전부담금		비고
					사업면적(㎡)	부과예정금액(천원)	
문경시 ◇◇◇◇과	--천 소하천 정비사업	문경시 --면 --리	'24. 4. 8.	'24. 3. 7.	87,675	65,621	
문경시 ◇◇◇◇과	--천 소하천 정비사업	문경시 --면 --리	'24. 4. 8.	'24. 3. 7.	82,182	62,824	

2. 사업인정의제 협의 부적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르면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 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천 소하천 정비공사” 등 2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2024. 3. 7. 소하천정비시행계획 공고 후 2024. 4. 1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인정의제 협의 공문을 보냈으며, 절차상 위법이 있어 향후 재결정보체계(LIST)를 통한 협의 시 각하될 우려가 있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부적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르면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⁴³⁾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8조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도시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 중 소하천 등에 대한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변경) 및 고시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변경, 폐지를 포함한다)·고시·협의권 및 서류의 공람 등의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소하천을 정비할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과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의 의제사항에 대하여 문경시 ♠♠과와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천 소하천 정비공사” 등 2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과와 협의도 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지 않았고, 실시계획 인가도 받지 않고 소하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4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4.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미수립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따르면 발주청⁴⁴⁾은 건설공사의 부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등에 대하여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에 따르면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계획에는 제1호 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 제2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관리 방식 제3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제4호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소하천 정비공사” 등 2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44)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

5. 공사원가 과다 계상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 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에 기존 교량 철거에 따른 고재를 반영하지 않아 “--천 소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25,044천 원(65.05톤, 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고, “--천 소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15,918천 원(40.65톤, 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40,962,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병합), BBB(병합)는 **훈계처분** 하시고, CCC는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문경새재 ---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읍면사무소과
 내 용

문경시 읍면사무소과에서는 --산에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관광 숲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문경새재 --- ---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사업현황

(단위: 천 원)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계약금액	계 약 일	사업기간 (중지일시)	도급자 (대표자)	비고 (공정률)
문경새재 --- ---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구상 용역	문경시 --읍 --리	기본계획 및 구상용역 1식	20,020	'23. 4. 25.	'23. 4. 27.~ '23. 8. 24.	(주)--엔지니어링 (---)	100%
문경새재 --- ---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문경시 --읍 --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1,317,800	'23. 11. 15.	'23. 11. 21.~ '24. 5. 18. ('24. 4. 8.)	(주)--엔지니어링 (---) 외 4개사	과업 중지

1. 기본계획 및 구상용역 발주 부적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 하도록 되어 있으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에 따르면 “품셈”이란 발주청에서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단위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수, 재료량, 장비량을 말하며, “표준품셈”이란 표준품셈관리기관이 공표한 품셈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계획 표준품셈」 12-2 관광·레저조경 분야 사업타당성 조사·분석업무에 따르면 관광·레저조경 분야의 사업타당성조사·분석 업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기본계획 수립 전 경제·기술·사회·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여 주어진 부지의 개발방식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진단 과정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관광·레저조경 분야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업무가 필요한 경우 관련 표준품셈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고,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문경새재 --- ---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구상 용역”을 추진하면서 (주)--엔지니어링과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대가는 없이 사업타당성 조사·분석업무 대가를 적정 대가⁴⁵⁾의 0~10%로 조정하여 예정가격을 22,000천 원으로 산정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2.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부적정

가. 전차용역 인정 부적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 따르면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특성에 맞도록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사업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45) 사업타당성 조사·분석업무 비용은 306백만 원으로 추정(문경시 제출 자료 참고)되며 기본계획 비용은 별도 계상하여야 함

그리고 같은 기준 [별표 1]에 따르면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정하고 있으며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⁴⁶⁾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고 있고, 참여기술인에 대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1점을 평가하되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1점을 평가하되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또는 금액 배점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있을 경우 참여기술인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 각 1점씩 평가하고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거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을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다른 평가항목 배점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2023. 10. 4. “문경새재 -산 --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입찰 공고를 하면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1) 사업명에 ‘--- (----)’, 2) 「기타법령」에 의한 산림레포츠시설, 3)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으로 1)~3)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본구상, 기본계획, 조성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한 실적이 각 2건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실적조건 미충족 시 최하점 적용)”라고 명시하여 사업 규모 등 실적과 무관한 사업명 등을 포함하여 과도하게 제한하였고, 2023. 4. 25. 수의계약을 체결한 “문경새재 --- ---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구상 용역”만 전차용역을 인정하는 등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46)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직접경비 계상 부적정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4조에 따르면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고, 같은 기준 제17조에 따르면 제14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각종 조사 등 발주청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경시 〇〇과에서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경우 각종 조사 등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직접경비 등만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문경새재 --- ---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대가에 선진사례조사비 명목으로 직접경비 21,000천 원을 계상(3인, 6박 7일 기준)하였고, 용역 중지기간(2024. 4. 8.)에 계약 상대방인 (주)---엔지니어링 소속 --- 이사 등 2명과 함께 2024. 4. 24. ~ 2024. 5. 2. 까지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등에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다.

3. 공무국외여행 부적정

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국외여행

「문경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1조 내지 제3조에 따르면 문경시 소속 모든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및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〇〇과장에게 허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르면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사람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에서 민간인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 단체공무국외여행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 공무국외여행의 목적, 필요성, 여행국가, 기간 및 경비 부담 등 여행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 방안(2012. 8.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가 이해관계업체 또는 산하기관 업무담당자와의 국외여행을 통해 유착관계가 형성되는 등 국외여행이 불법로비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이해관계자와 유착을 차단하기 위하여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여행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국외여행이 필요한 경우 공정성 저해 여부를 사전 심사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공무의 수행 등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민간인을 포함하여 여행의 적정성 등을 위원회에 심사받아야 하며,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여행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국외여행이 필요한 경우 공정성 저해 여부를 사전에 심사받아 가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공무국외여행 시 계약상대자인 (주)---엔지니어링 소속 --- 이사 등 2명과 동행하였음에도 내부 공무원(---, ---, ---, ---,---)만 출장을 가는 것으로 심사요구서를 제출 후 허가를 받아 2024. 4. 24.~ 2024. 5. 2.까지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등에 바람직하지 못한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다.

나.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지연 제출

「문경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자가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복명서⁴⁷⁾를, 여행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47)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행기간이 30일 미만의 공무국외 여행자에 대하여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과-9072(2024. 4. 5.)호에 따르면 귀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회신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공무의 수행 및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귀국 후 2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2024. 4. 24. ~ 2024. 5. 2.까지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등 국외출장을 다녀왔음에도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024. 7. 9. 감사 기간 중 지적을 받아 48일 지연하여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불필요하게 계상된 선진사례조사비 **21,000,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국외여행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국외여행이 필요한 경우 공정성 저해 여부를 사전 심사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④ 관련자 AAA, BBB는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 ⑤ CCC, DDD(병합)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기 관 경 고·시 정 요 구

제 목	건축 조례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문경시에서는 건축법에 따라 「문경시 건축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9. 10. 3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대한 일부 사항을 개정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건축법」 제11조에 의하면 건축물⁴⁸⁾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축법」 제20조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 후 착공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8)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건축법」시행령 제2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의하면 재해복구, 홍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등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 재해복구, 홍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준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신청한 사항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 경우 허가 및 신고를 수리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문경시 ㉠과에서는 건축신고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농막)에 대하여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농막⁴⁹⁾을 제외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문경시 건축조례」를 개정(시행 2019.10.31.)하였고, 개정된 조항을 근거로 하여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건축조례를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표] 가설건축물 신고 현황(조례개정 이전)

구분	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비고
가설건축물 (농막)	214건	71건	48건	25건	23건	11건	매년 평균 36건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49)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그 결과 「건축법」에 따라 신고 및 관리되어야 할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위법으로 건축되고 운영되는 등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할 문경시
에서 위 [표]와 같이 매년 약 40건 정도의 위법건축물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 조례를 운영한 문경시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에 따라 **기관경고** 조치 하며,(기관경고)
- ③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농막에 대하여 건축신고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되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피난 및 방화구조 관련 건축허가(신고)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〇〇과

내 용

문경시 〇〇과에서는 2024. 5. 2. --동 0000번지 상 단독주택 신축(건축주 : --- 외1)에 대한 건축허가 등 7건과 2023. 7.24. --동 0000번지 상 용도변경 신고(건축주 : ---) 등 2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위법(부당)하게 처리하였다.

1. 소방관 진입창 설치 부적정

「건축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의하면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의하면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이중유리 사용 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여야 하는 등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문경시 〇〇과에서는 2층 이상 11층 이하의 층에는 각각 1개소 이상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진입창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하고 부적절할 시에는 설계도서의 시정·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모전동 1175번지 상 단독주택 신축허가(건축주 : --- 외1) 등 3건의 건축허가 시 소방관 진입창 누락 및 유리두께 기준 부적정 등 소방관 진입창 설치에 대하여 관련법 검토를 소홀히 하여 설계 도서의 시정 및 보완요구 없이 건축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 있다.

[표 1] 소방관 진입창 미설치 현황

구분	대지위치	건축주	주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허가일	비고
신축 허가	--동 0000	--- 외1	단독주택	159.95	290.22	2	2024. 5. 2.	미설치
신축 허가	--동 0000 외 1필지	--- 외 1	제2종근생	220.99	408.68	2	2024. 5.31.	유리두께 부적정
신축 허가	--동 00-00	---	단독주택	70.32	116.46	2	2024. 4.16	유리두께 부적정

그 결과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방화유리창 설치 부적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2항에 의하면 「건축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⁵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50)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⁵¹⁾

따라서 문경시 田田과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는 창호는 기준에 적합한 방화유리창으로 설계되었는지 확인하고 부적절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시정 및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동 00-0번지 상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신축허가(건축주 : ---) 등 3건의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신고 시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의 창호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검토를 소홀히 하여 설계도서의 시정 및 보완요구 없이 건축허가(신고)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2] 방화유리창 미설치 현황

구분	대지위치	건축주	주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허가 및 신고일 (사용승인일)	비고
신축 허가	--동 00-0	---	단독주택 제1종근생	123.84	242.07	2	2024. 4.15.	
용도 변경 신고	--동 0000	---	단독주택 제2종근생	156.86	438.02	3	2023. 7.24.	
용도 변경 신고	--동 000-0	---	제1종근생	409.52	1,771.34	5	2023. 1. 9. (2023. 3.16.)	

그 결과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화재확산을 일정시간 막아 주어 인접건물로 불이 번지는 것을 예방하는 등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1) 다만, 스크린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부적정

「건축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에 의하면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 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그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아래 [표 3]의 복도의 유효너비에도 불구하고 해당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8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4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 3]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구 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2.4미터 이상	1.8미터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5미터 이상 (의료시설의 복도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따라서 문경시 ㄱㄱ과에서는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등의 건축허가 시에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도서 상의 복도의 유효너비가 바닥면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부적절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시정·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4]와 같이 --면 --리 000-00번지 상 종교 시설 증축허가(건축주 : 대한불교조계종) 등 3건의 건축허가 처리 시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복도의 유효폭은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복도의 유효폭 미달인 설계도서의 시정 및 보완 요구 없이 건축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4] 복도의 너비 부적정 현황

구분	대지위치	건축주	주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허가일	복도너비		비고
						적정	설계	
증축 허가	--면 --리 000-00	----	종교시설	706.61 706.61	2024. 2.26.	1.5m	1.06m	
신축 허가	--동 000-00	문경시	문화 및 집회시설	116.39 286.37	2022.11.11.	1.5m	1.47m	
신축 허가	--동 000-0 외 1필지	----	노유자시설	279.6 1,101.6	2022. 3.31. (2023. 8. 3.)	1.5m	1.25m	

그 결과 비상 시 재실자의 원활한 피난과 대피 등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관련 법령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 BBB, CCC, DDD는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문경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문경시 ▷▷▷▷과에서는 “문경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화구조 관련 건축허가 처리 부적정, 건축설계 및 현장조사·검사업무 대행 등 소홀, 건설사업관리 부적정, 공사감독 소홀 등 다음과 같이 위법(부당)하게 처리하였다.

[표 1] 문경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계약 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사업명	도급자	계약금액 (변경)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비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문경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주)----건축 사사무소	193,000	2021.12. 7.	2021.12.13.	2022.11.24.	
공사		---건설 (주)	2,211,125 (2,595,650)	2022.12.20.	2022.12.26.	2024. 5.13.	총괄
			338,390 (405,500)	2022.12.20.	2022.12.26.	2024. 1.30.	1차
			1,872,735 (2,190,150)	2023. 1.30.	2023. 2. 3.	2024. 5.13.	2차
건설사업관리		건축사 사무소	34,855	2023. 1.16.	2023. 1.30.	2024. 5.13.	

1. 내화구조 관련 건축허가 처리 부적정

「건축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하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위락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⁵²⁾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2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의하면 건축물의 안전·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아래 [그림]과 같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림]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단위 : 시간)

구성 부재 용도				벽						보 · 기둥	바닥	지붕 · 지붕틀
				외벽				내벽				
				내 력 벽	비내력벽		내 력 벽	비내력벽				
					연소우려 가 있는 부분	연소우려 가 없는 부분		간막이벽	승강기· 계단실의 수직벽			
용도구분		용도구모 층수 / 최고 높이(m)										
일 반 시 설	문화 및 집회시설	12 / 50	초과	3	1	0.5	3	2	2	3	2	1
			이하	2	1	0.5	2	1.5	1.5	2	2	0.5
		4 / 20 이하		1	1	0.5	1	1	1	1	1	0.5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건축허가 및 신고 시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요구조부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로 설계되었는지 확인하고 부적절할 시에는 시정·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했다.

52)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2022. 7.29. 건축협의(대수선) 허가 시 신청 사항을 검토하면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를 초과하여 2,774.05제곱미터인 문경 --박물관의 내부 엘리베이터 설치 등 대수선 허가 건에 대하여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검토를 소홀히 하여 내화구조를 적용하지 않은 채로 허가하였으며, 2024. 4. 23. 허가사항 변경허가 처리 시에서도 설계도서의 시정·보완 조치 없이 허가 처리한 사실 있다.

[표 2] 건축협의(대수선) 현황

구분	대지위치	건축주	용도	허가일자 /준공일자	허가내용		건축허가 및 검사조서	비고
					대지면적 (㎡)	건축면적 /연면적(㎡)		
대수선	--리 432-5	문경시	문화 및 집회시설	2022. 7. 29.	37,086	3,382.79 / 2,774.05	내화구조 적정	허가
				2024. 4. 23.			미제출	변경 허가

2. 건축설계 및 현장조사·검사업무 대행 등 소홀

「건축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등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현장조사·검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조사·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⁵³⁾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20조에 따라 이 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53)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건축설계 및 현장조사·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주)----건축사사무소에서는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등과 관련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는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주)----건축사사무소에서는 위 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 [표 2]와 같이 추진하면서 건축 허가 신청 시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500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건축물의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적용 하였으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내화구조 적합으로 조사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였고 허가사항 변경허가 시에는 이마저도 제출하지 않는 등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건축 허가 및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가 처리되도록 하였다.

3. 건설사업관리 부적정

「건축법」 제25조제3항에 의하면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사 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사법」 제20조에 의하면 건축사는 「건축사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사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30조의3에 따라 해당 건축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감리자는 건설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면 건축주에게 알린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자에게 시정이나 재시공 등을 지시하여야 했다.

그런데 문경시 ▷▷▷▷과에서 시행한 위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 내화구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감리자(--건축사사무소 ○○○ 건축사)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본 사업에 대한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추진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내화구조 적용 여부에 대한 적절한 검토 및 시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체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내화구조에 적합한 기준 적용을 위한 재시공 비용 8,400천 원(제경비 포함)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공사감독 소홀

가. 하도급 및 현장배치기술자 검토 소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의하면 건설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산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아래 [표 3]과 같이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표 3] 하도급 관리 체계 및 관련 규정

구 분	관련 규정	원도급자	하도급자	발주처 (공공기관)	비고
하도급 계약관리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계약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하도급 계약 통보의 적정성 심사 기준 등	·하도급 체결 시 발주자에게 통보 등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 계약 미통보 시 통보가능 등	·통보받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기타(공사 내규) ·하도급 계약 통보 관리 등				

또한, 「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제7조에 의하면 감독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 기술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 요원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품질시험의무 등 관련 법규에 부적합 하였을 때 등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장에게 실정을 보고하여 교체여부에 대한 방침을 받은 후 교체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19조에 의하면 감독자는 시공사가 제출하는 하도급통지 또는 승인신청서류를 검토·경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하면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⁵⁴⁾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검토·심사하여야 하며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인 등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장에게 실정을 보고하여 교체여부에 대한 방침을 받은 후 교체하도록 지시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는 아래 [표 4]와 같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공사감독자로 지정된 --9급 --- (2022.12.26.~2023.6.30.)이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공사로부터 하도급계획서 제출 시 현장배치기술자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명시된 배치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심사를 누락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4] 하도급 계약 체결 현황

공종	상호	하도금액 (천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현장배치 기술자	자격요건 적정여부	하도급 적정성 심사	비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	(주)--건설 (---)	166,118 (92%)-1차	2023. 3. 6.	2023. 3. 6. 2023.10. 2.	--- (특수용접 기능사)	부적격	부	경력증명서 미제출
		41,846 (92%)-2차		2023. 3. 6. 2024. 1. 30.	--- (특수용접 기능사)	부적격	부	경력증명서 미제출
실내건축 공사	(주)-- ---	1,137,792	2023. 3.28.	2023. 3.28. 2024. 1.30.	--- (건축기사)	적격	부	경력증명서 미제출

54) 공사예정금액 30억원 미만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설계서 등의 검토 소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4조에 의하면 공사 착수단계에서 공사감독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감독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서 등 계약문서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공사감독자는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설계자의 의견을 물을 수 있고 같은 지침 제134조에 의하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공사착수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이내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142조에 의하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공사 착수단계에서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 조건에 부합여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공사시행단계에서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공사착수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건설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상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9급 --- (2022.12.26.~2023.6.30.)과 -9급 --- (2023.7.1.~2024.5.13.)이 공사감독자로서 지정되어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서 등의 현장 조건 부합여부 및 상호 일치여부 등의 시공사 검토 미지시, 시공자의 시공계획서 누락 등으로 해당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건축허가 시 누락된 내화구조가 공사 시공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하였다.

5. 공사비 과다 계상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4조, 제124조, 제138조, 제142조 등에 의하면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설계도면·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건설 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된 공정은 설계 변경 하여 감액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상기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와 관련 없는 수장대 제작 설치를 반영하여 61,229천 원, 시방서 및 표준품셈에 따라 바름 횟수를 2회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데도 3회 모르타르 바름으로 반영하여 5,788천 원 등 총 사업비 67,017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하게 적용되었는데도 설계변경이나 감액하지 않고 사업을 준공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건축물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제50조에 적합하도록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시정)
- ③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와 공사감리 부적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법」 제28조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④ 관련자 AAA는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부적정
 소 관 청 문경시
 관 계 부 서 ○○과, ♡♡과, ◇◇◇◇과, ☹☹☹☹과, △△△△△△△
 내 용

문경시 ♡♡과 외 4개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교 보수보강공사”의 4개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절차⁵⁵⁾를 진행하였다.

[표 1] 신기술·특허공법 개요

사업명 (발주부서)	공법명	공법제원	사업비 (억원)	공고번호	위원회 개최방법	비고
--교보수보강공사 (♡♡과)	초속경 LMC포장	A=515m ²	2.6	문경시 공고 제2022-0000호	대면심의 (22. 7. 18.)	
문경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	비개착(추진)공법	L=42m	3.8	문경시 공고 2023-00호	서면심의 (23. 5. 3. ~ 5. 10.)	
--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과)	복합말뚝	L=5,341m	9.6	문경시 공고 제2023-0000호	서면심의 (23. 11. 6. ~ 11.10.)	
-로 --교 개체공사 (○○과)	합성형 라멘교	L=32m, B=7.5m	8.0	문경시 공고 제2022-000호	서면심의 (22. 7. 8. ~ 7.14.)	
문경새재 --산 --- 조성사업 (☹☹☹☹과)	가.강관거더 나.잔도 다.무주탑,출렁다리	1식	가. 52 나. 25 다. 77	문경시 공고 제2024-000호	대면심의 (다: 24. 2.22.) (가.나: 24. 4. 9.)	

1.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구성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12절-제3관(공법위원회 구성·

55) 평가기준 확정 → 평가위원 모집 공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공고 →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 →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 정성평가 → 평가결과 공개 → 공법선정자 통지

운영)에 따르면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하고, 위원회는 국가기관 및 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전일까지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제안참여자가 제안서 제출 시 사업부서에서 미리정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도 문경시 ♡♡과에서는 “--교 보수보강공사” 특정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평가위원을 문경시 공고 제2022-0000호로 모집하면서 접수인원⁵⁶⁾이 모집인원⁵⁷⁾에 비해 부족함에도 재공고를 통해 추가 모집 하지 않고 부족한 예비위원 8명을 문경시 기술자문심의위원 및 문경시 시설직(토목) 퇴직자 중에서 임의로 예비평가위원을 선정·구성하였고, 또한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평가위원 중 불참 위원 4명에 대해서도 고령자순으로 평가위원을 대체선정하지 않고 임의로 퇴직공무원 3명을 포함하여 평가위원을 선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위원 자격이 없는 해당 자치단체 퇴직 공무원(위원 7명중 3명)이 위원에 선정되어 위원회에 참여하고 평가를 하게 되어 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게 운영되었다.

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심의방법 부적정

56) 접수현황: 16명(서류심사 합격자 13명)

57) 모집인원: 21명 이상(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지방자치단체를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12절-제3관(공법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르면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고,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 제안서를 평가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법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 제안 참여자에게 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공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제안 참여자는 공법 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 해당 공법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문경시 ○○과, △△△△△△△, ◇◇◇◇◇과에서는 “-로 ---교 교체 공사”, “문경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필요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해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이 공정하게 회의를 주관하여 위원들이 제안서를 평가 하도록 하고, 제안참여자가 공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위원은 제안참여자에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법평가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위 3건의 공사 및 사업”⁵⁸⁾에 필요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해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회를 서면으로 실시하여 제안참여자에게는 공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고, 위원들에게는 공법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게 되어 위원회가 심도 있고 공정하게 평가되지 않게 되었다.

3.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정량평가 부적정

58)별암자연재해위험지구 공법명: 복합말뚝(L=5,341m)

「지방자치단체를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12절-제2관-6(제안서 평가)에 따르면 공법 제안서는 공사비, 경영상태 등 정량적 평가와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 등 정성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고,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같은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표]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정량적(객관적) 평가는 아래 [표 2]와 같이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 2]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예시)	평가기준(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공사비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20	■사업담당자가 평가
	경영상태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위 예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세부배점을 가감 조정하여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공법평가와 관련 없는 평가항목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문경시 ㉠㉡㉢㉣과에서는 “문경새재 --- --- 조성사업”에 적용하려고 하는 신기술·특허공법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상기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표]에 따라 확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상기 사업에 적용하려는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한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아래 [표 3]과 같이 해당 공법평가와 관련 없는 항목(기술능력평가 등)을 추가하여 공법선정에 필요한 정량평가가 적정하지 못하게 평가되었다.

[표 3] 정량(객관적)평가 기준(26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계			26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26)	공사비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10	사업담당자가 평가
	경영상태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4	
	시공실적	-시공완료 실적건수 검토	8	
	지역기술 발전기여도	-지역기술발전기여도	1	
	기술능력평가	-보유기술자의 등급	3	

조치할 사항 문경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자 AAA, BBB, CCC(병합), DDD는 **훈계처분** 하시고,
- ③ 관련자 EEE(병합)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